





---

-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2018. 9.



##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가 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단위
-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일 세대원
- **수급자** : 이 사업안내서에서의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칭함(에너지바우처를 수급(발급)받는 자는 '대상자'로 지칭)
-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자(세대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 본인만이 대상자(행복e음상에 대상자로 지정되는 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자)**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친족),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 단, 서식(신청서 양식 등) 상의 '신청인'은 바우처를 발급받는 대상자 본인을 뜻함
- **기존('17년) 대상자** : 2017년('17.11~'18.5월까지 사용)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대상자
- **기존('17년) 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 : 기존('17년) 대상자였으나, '18년도 신청기준일 현재('18.10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원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등 2017년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구)
  - \* 단, 제외된 대상자가 '18년도 신청기간내 '18년도 신청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자동 중지자**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전출입(가상카드) 또는 사망했을 경우, 행복e음상에 자동 중지자로 표기됨
-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시설의 장으로부터 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를 뜻함
- **발행 고지서** : 가구별로 발행되는 에너지사용요금 고지서(전기·도시가스 등)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로, 발행일이 고지서에 명기됨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사항 신규 대비표

구 분	2017년	2018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li> <li>-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li> <li>-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1952.12.31. 이전 출생자)</li> <li>•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li> <li>•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li> <li>• 임산부</li> <li>• &lt;신설&gt;</li> <li>• &lt;신설&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li> <li>-----</li> <li>-----</li> <li>-----</li> <li>-----</li> <li>• 노인(1953.12.31. -----)</li> <li>• 영유아(2013.01.01. -----)</li> <li>• 장애인(삭제)</li> <li>• -----</li> <li>• 중증질환자</li> <li>• 희귀난치성질환자</li> </ul>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수급자</li> <li>○'17년10월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li> <li>-----</li> <li>○'18년10월 -----</li> <li>-----</li> </ul>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가구 : 84,000원</li> <li>○2인가구 : 108,000원</li> <li>○3인이상가구 : 121,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가구 : 86,000원</li> <li>○2인가구 : 120,000원</li> <li>○3인이상가구 : 145,000원</li> </ul>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간 : '17.10.18~'18.1.31</li> <li>○가구원수, 이용권(가상·실물), 에너지원 대상자 변경: '17.10.18~'17.11.1</li> <li>* 단, 전입에 따른 에너지원변경, 사망에 따른 대상자 변경은 5월 말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간 : 18.10.17~'19.1.31</li> <li>○가구원수, 이용권(가상→실물), &lt;삭제&gt; 대상자 변경: '18.10.17~'18.11.5</li> <li>* 단, 에너지원변경, -----</li> <li>-----</li> </ul>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기간 : '17.11~'18.5월</li> <li>- (실물카드) 5월말까지 사용</li> <li>- (가상카드) 공급사에서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기간 : '18.11.~'19.5월</li> <li>- (실물카드) -----</li> <li>- (가상카드)-----</li> <li>-----</li> </ul>

구 분	2017년	2018년
<p>기존대상자 (‘17년대상자) 신청</p>	<p>○기존(‘16년) 대상자 중 자동신청자 및 신규신청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7년도 지원내용 또는 신청 안내 (지자체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신청자) 자동신청결과 안내 및 신청정보 변경희망시 재신청 안내</li> <li>- (신규신청 필요대상자) 주소, 가구 원수 변경 등으로 신규신청 안내</li> </ul> <p>○(자동신청자) ‘16년신청정보와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li> <li>· 전출입자중 실물카드 사용자</li> </ul> </li> <li>* ‘16년 신청정보로 자동신청되며, 대상자가 신청정보 변경희망시 재신청(정보수정)을 하여야 함</li> </ul> <p>○(신규신청 필요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충족하나, 가구원수 변동, 전출(가상카드), 대상자 사망(2인이상가구) 등의 사유로 바우처가 중지되어 지원등급,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대상자 변경 등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li> <li>- &lt;신설&gt;</li> </ul>	<p>○기존(‘17년) ----- ----- ‘18년도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 -----</li> <li>- ----- -----</li> </ul> <p>○(자동신청자) ‘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li> <li>· ‘17년 ----- -----</li> <li>· ----- -----</li> <li>* ‘17년 ----- ----- -----</li> </ul> <p>○(신규신청 필요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 ----- ----- ----- ----- ----- ----- ----- ----- -----</li> <li>- <b>최근 3년(‘15~‘17년)동안 이용 권사용실적이 없는 대상자</b></li> </ul>
<p>신청정보 수정 (재신청)</p>	<p>○자동신청자 또는 신규신청을 완료한 대상자가 기존 신청정보 (이용권,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행복e음 시스템상에 정보 입력 오류 또는 행정실수 등의 경우 정보수정(재신청)</p>	<p>○(동일) ----- ----- ----- ----- ----- ----- -----</p>

구 분	2017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사망(2인이상 가구에 한함)으로 자동중지된 경우, 대상자 변경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가능</li> <li>○가상카드 대상자의 전출입으로 자동중지된 경우, 에너지원 변경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ul>
신청(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서</li> <li>○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li> <li>○가상카드 신청시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li> <li>○-----</li> <li>-----</li> <li>○-----</li> <li>-----</li> </ul>
실물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li> <li>-----</li> <li>-----</li> <li>-----</li> </ul>
전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신용문제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용카드 발급</li> <li>○직접 방문이나 전화문의를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li> <li>-----</li> <li>-----</li> <li>-----</li> <li>○(동일) -----</li> <li>-----</li> </ul>

# 목 차

<b>I. 사업개요</b> .....	<b>11</b>
1.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	13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15
<b>II. 대상자 선정 및 관리</b> .....	<b>21</b>
1. 대상자 선정(신청~통지) .....	23
2. 대상자 자격관리 .....	30
3. 기존(17년도) 대상자 정보관리 .....	33
<b>III. 바우처 발급과 사용</b> .....	<b>35</b>
1. 에너지바우처 이해 .....	37
2. 에너지바우처 발급 .....	40
3. 에너지바우처 사용 .....	42
4. 에너지공급사 역할 .....	44
<b>IV. 사후 관리</b> .....	<b>47</b>
1. 기관별 역할 분담 .....	49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	50
<b>V. 예산집행 및 정산</b> .....	<b>53</b>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	55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	57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 지급 .....	59
<b>VI. FAQ (자주 묻는 질문)</b> .....	<b>61</b>
1. 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기준 문의 .....	63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	68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	77
4.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 .....	81
5. 기타 문의 .....	89
붙임1. 공통서식 .....	92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	102
붙임3.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범위 .....	110
붙임4.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사명 및 공급사 코드 .....	119
붙임5. 에너지 공급사별 카드 납부 방식, 고객센터 확인 방법 .....	121
붙임6. 에너지법 3단 비교표 .....	130
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e음 시스템 가이드 .....	144
붙임8.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탈 가이드 .....	169



# **I . 사업 개요**

- 1.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1.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 1 바우처의 유형

\* 출처 : 바우처연구(2002, 장광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연구(2009, 박광수)

-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혜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구매권을 사용하면 정부가 공급자에게 결제액(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
- (묵시적 바우처) 물리적 증표 없이 이용자 및 관련자가 수혜권리가 있음을 인지 후 자유롭게 재화·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바우처가 대표적 사례

-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이후에 영수증이나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환급하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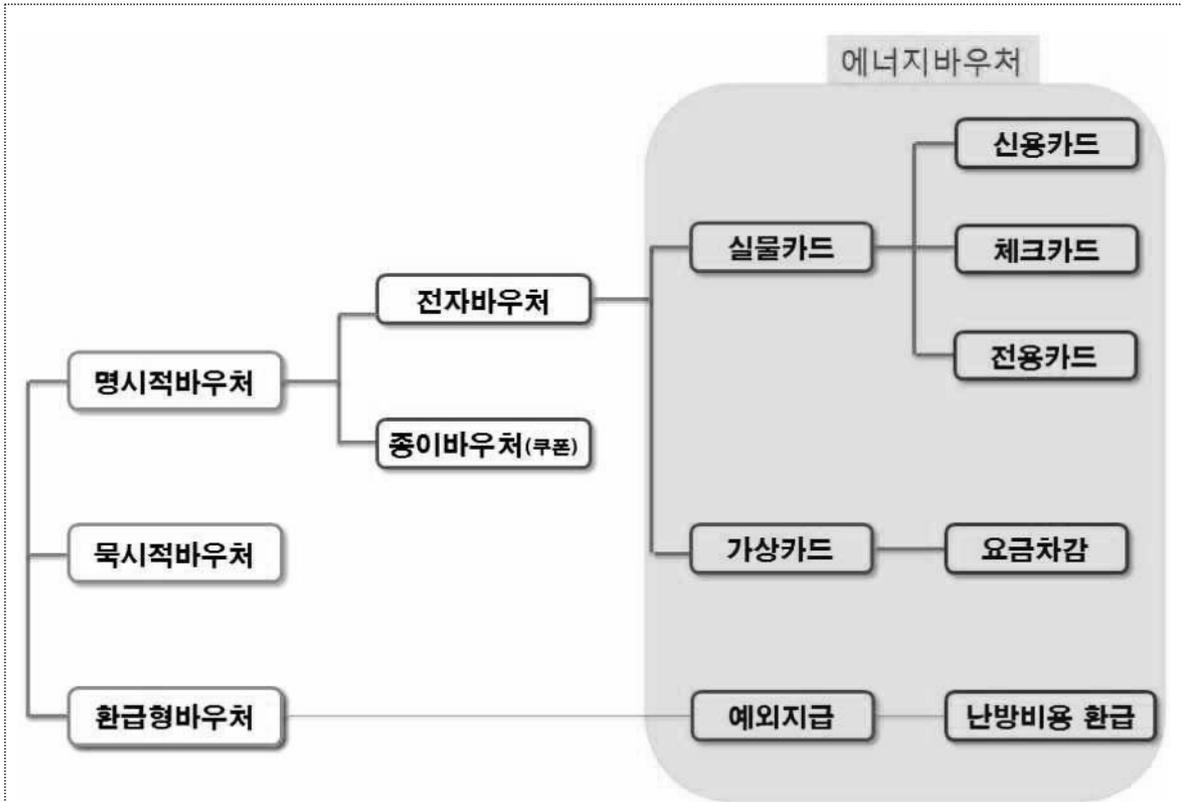
## 2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 <에너지바우처의 유형>



※ 전산상의 문제, 난방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실시

##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1

#### 추진경과

- 18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13년 5월)
  -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를 거쳐 사업 예산 반영 및 도입 확정('14.8월)
-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14.12~'15.6월)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확정('15.8월, 사회보장위원회)
- '1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5.11~'16.1월 , 사용 : '15.12~'16.3월)
- '1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6.11~'17.1월 , 사용 : '16.12~'17.4월)
- '17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7.10~'18.1월 , 사용 : '17.11~'18.5월)
- 19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17년 7월)
  -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37-4번과제)
- '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8.10~'19.1월 , 사용 : '18.11~'19.5월)

### 2

#### 예산규모 및 법적근거

- (예산) 612억여원 (민간경상보조, '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 기준)
  -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3****지원대상**

##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18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18년 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8.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4****지원금액**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6,000	120,000	145,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5**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1월 8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실물/가상카드 상세내용은 23p참조)
  -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 해야 함

**6**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18. 10. 17 ~ '19. 1. 31

- \* 행복e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18.10.17(수)~'19.1.31
- \* 가구원수 변경, 이용권 변경(가상카드 → 실물카드) 기한 : '18.10.17~'18.11.5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가구원 수, 이용권선택(가상→실물), 대상자변경(단순변경)	'18.10.17~'18.11.5까지
- 이용권선택(실물→가상),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변경(2인이상 가구 대상자 사망시)	'18.10.17~'19.5.31까지

○ (사용기간) '18. 11. 8 ~ '19. 5. 31

- \* 가상카드는 11월 8일부터 5월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7**

**신청 및 사용관련 시스템 안내**

구 분	기 능
(신청단계) 행복e음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li> <li>○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정보변경</li> <li>○ 에너지바우처 수급 중지 등</li> </ul>
(사용단계) 업무포털 시스템 (www.energyv.or.kr/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통계 및 사용 현황</li> <li>○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승인</li> <li>○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li> </ul>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기존('17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 관리(33p참조)

- 행복e음상의 '17년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18년 자격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18년 지원여부 및 재신청(필요시) 안내 등을 실시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노인·영유아·장애·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구원 여부), 가구원수 등을 확인
- (발급단계)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지원금액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하고,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 실물카드(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등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 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본인, 친족,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li> <li>▶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li> </ul>
↓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및 가구원수 확인</li> <li>▶ 에너지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li> </ul>
↓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 </ul>
↓		
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결과 통지(서면 또는 전자문서 발송)</li> <li>* 결정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전송</li> </ul>
↓		
카드발급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li> <li>▶ 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공급사로 전달</li> <li>* 관련 DATA는 한국에너지공단도 공유됨</li> </ul>
↓		
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li> <li>*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발급신청 가능</li> </ul>
↓		
결제·차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판매소 등에서 에너지비용 결제</li> <li>* 가상카드는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li> </ul>
↓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재신청 등을 통한 정보관리</li> </ul>
↓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안내</li> <li>▶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담당공무원)</li> <li>*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중지처리 후 국가바우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li> </ul>
↓		
정산	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예탁 및 정산</li> <li>▶ 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정산 등</li> </ul>



## **II.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1. 에너지바우처 신청 · 결정 · 통지안내**
- 2. 대상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 3. 기존(2017년) 대상자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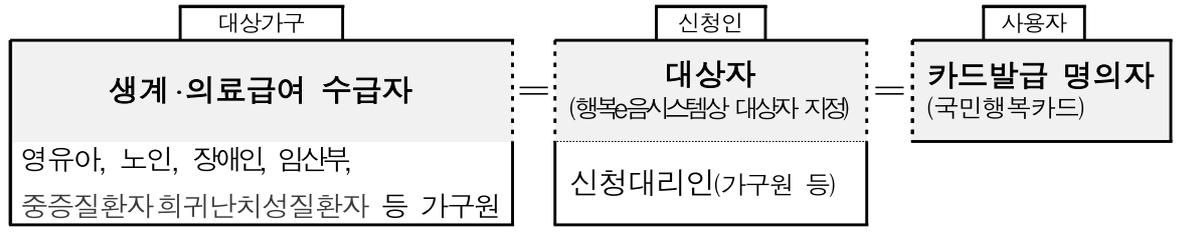


# 1. 에너지바우처 신청 · 결정 · 통지안내

\* 기존('17년) 대상자는 「3. 기존('17년)대상자 정보관리」(33p)에 따름

## 1 신청서 작성 전 용어정의

※ 대상자 관련 용어 정의(표)



### ○ (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실물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 ○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행복e음 시스템상의 '신청인' 항목에 입력되는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친족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란에 대상자명 기재 가능)

##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카드방식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 행복e음 시스템상에서 신청·접수가 완료된 신청정보는 변경 불가\*가 원칙

\* 30p 정보변경 부문 참조

### ○ 해당 가구의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 \* 42p 에너지바우처 사용 부문 참조

## -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 1) 바우처 대상자(수급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이 원칙
  -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가족명의로 카드발급을 신청 (전화로 카드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 등은 37-38p 실물카드 부문 참조)
  - \*\*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
- 2) 만 14세 미만의 수급자가 바우처 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엔 카드발급이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가상카드로 신청을 안내
  -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중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3) 도시가스사별로 결제방식(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은행별 BC카드)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결제방식·카드 등을 확인 후 카드 신청 필요(붙임4 - 121p 참조)

##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 1) 에너지요금 고지서의 주소와 대상자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72p FAQ Q30 참조)
- 2) 가상카드는 사용 중간에 실물카드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최초 신청 접수시 유의(30-31p 정보변경 부문 참조)
- 3) 연체요금(미납금)이 있는 경우, 연체금이 아닌 동절기 요금(11~5월 발행된 고지서 기준)이 차감되며, 과다한 연체요금으로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경우(요금차감 불가)에는 가상카드 신청이 불가(실물카드로 변경 신청)
  -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한 종류의 에너지만 선택할 수 있음(실물카드는 별도 에너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음)

### 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4

## 신청서류 안내

### ○ (공통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공통서식 제1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확인서, 희귀난치병질환자 확인서를 제출

- **임신 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등을 첨부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 \* 담당공무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불필요

### ○ (추가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 취사용 도시가스요금만 표기된 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온 경우는 다른 에너지원의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고지서(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센터 확인 방법

- 고지서(영수증) 분실, 직권신청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에너지공급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해당 가구의 고객센터를 요청 가능(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단, 유선 확인시 고객센터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타인이 차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력 오류가 없도록 거듭 확인 필요

5

신청서류 검토

- (가구원 특성 및 가구원수)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

- \* 가구원 특성 : 주민등록표상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인 이상 포함 여부
- \*\* 가구원수 산정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산정

- (고객번호 확인) 가상카드(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요금 고지서(영수증)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시스템 입력 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함

- \* 고객번호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 \*\* 행복e음내 고객번호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오류를 방지하고, 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는 고객번호는 신청인이 가져온 고지서상의 고객번호를 재차 확인하여 입력
- \*\*\* 1주택 다가구 등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가구가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 '전기고객번호로만 중복으로 가상카드 발급 가능(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은 1개의 고객번호로 1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가구는 전기 차감을 신청)

※ 신청서류 검토시 유의사항(공급사코드 및 고객번호 관련)

- 아파트 단지의 고객번호는 '단일 고객번호' 또는 '가구별 개별 고객번호'가 있고, 동일 단지내에도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고객번호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 확인시(고지서 미제출시), 동일단지내 '주택용 고객번호'와 '상가 고객번호' 등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
- 1개의 에너지공급사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명만 보고 에너지원별 공급사 코드를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 (공급사 코드 붙임4 참조)
- 고객번호 자릿수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함(단일고객번호의 경우 동·호수정보 반드시 필요)

5

신청서 입력(읍·면·동) - 행복e음 시스템

- 신청서를 (서면으로)제출 받을시에는 신속하게 시스템에 입력 실시
- 시스템 입력 후, 「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접수일자 생성 확인)

\*「저장」만 하고 「접수」버튼을 눌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접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결정·통보가 지연

- 「접수」처리 후, 신청정보 오류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 요청  
\* 단, 시군구에서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반려가 불가하므로 읍·면·동에서는 중지 처리 후 재신청 진행(이용권 변경(가상→실물) 기간 주의)

6

결정(시·군·구) - 행복e음 시스템

- 신청서류 및 가구원 특성·가구원 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됨

**<지원금액 산정표>**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6,000	120,000	145,000

- 신청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취소.접수반려 실시(행복e음)

\* 단,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반려 불가

○ 읍·면·동 신청.접수 후 결정 이전에 대상자가 전출했을 경우, 전출지의 시군구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해당 대상자가 전입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결정 이후 전출했을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재신청 필요(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6**

**통지(시·군·구) - 행복e음 시스템**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격 여부 (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공통서식 제3호)

\* 통지내용 : 대상자격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카드종류(실물/가상카드), 가상카드 에너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

○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사용중지(31p) 참조)

\*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결정 및 통지"

- 에너지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대상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 1 대상자 정보 확인조사

-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생계·의료급여와 연계)

\*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 가능

### 2 대상자 정보변경

- **(자격·지원금액 유지)** 최초 결정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사용기간, '18.11~'19.5월) 동안 유지됨
- **(재신청) 대상자의 사망**(2인이상 가구에 한함) 및 **전출입**(가상카드에 한함)의 사유로 자동중지 된 경우, 대상자 변경, 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을 위한 재신청 가능

#### - (대상자 사망시) 대상가구내 대상자 변경을 위한 재신청

\* 대상자 사망시에는 행복e음상에 사망으로 인한 중지가 되며, 담당공무원은 다른 가구원(수급자가 아니어도 됨)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1인가구는 해당없음)

\*\*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실물/가상카드)는 동일하게 유지(실물카드는 새로운 대상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하여 잔액 사용 가능)

#### - (가상카드 대상자의 전출입시) 고객번호·에너지원 변경을 위한 재신청

\* 가상카드 대상자 전출입시 행복e음상에 전출입으로 인한 중지가 되며, 전입지의 담당공무원은 고객번호 또는 에너지원 변경을 위한 재신청 안내

\*\* 전출로 인한 에너지 요금 중간 정산시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차감) 불가

\*\*\*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새로운 주소지의 고객번호 또는 에너지원 변경만 가능(실물카드로 변경발급 불가)

- **(정보수정)** '실물→가상',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주거형태'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지처리 후 정보수정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가구원 수, 이용권선택(가상→실물), 대상자변경(단순변경)	`18.10.17~`18.11.5까지
- 이용권선택(실물→가상),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변경(2인이상 가구 대상자 사망시)	`18.10.17~`19.5.31까지

- **(처리방법)**

- 대상자의 신청화면에 접속하여,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바꾸고 「정보수정」을 선택한 다음, 「변경선택」을 클릭하여, 수정해야할 항목을 모두 선택(중복선택 가능)
- 「이력확인」버튼을 눌러 기존의 정보를 불러온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변경

\* 붙임7. 행복e음 시스템가이드 참조

- **(실물→가상)** 카드방식 선택 실수로 인한 '실물→가상'카드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11월 5일이후로 '가상→실물'카드로의 변경은 불가능
- **(에너지원.공급사.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및 공급사코드, 고객번호 수정 가능 (단, 차감된 내역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해당공급사에 중지 및 수정사실을 알리고 처리)

**3**    **사용중지(시·군·구)**

○ (사용중지 및 회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시·군·구 담당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에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중지 및 회수' 조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중지신청-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포기하거나 가구원 모두가 장기입원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 적발 등 중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 시스템상에서 [중지환급신청] - [중지환급사유] - [중지신청-본인포기]를 선택하여 절차 진행
- \* 본인포기의 경우에도 추후 재신청이 가능함

#### 4

#### 개인정보 보호

-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 3. 기존(2017년) 대상자 정보 관리

- ◇ 행복e음의 기존('17년)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18년도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18년 지원내용과 신규 및 재신청 안내 실시

#### 1 '17년 대상자 정보 관리

- 담당 공무원은 행복e음 시스템(가구원정보 포함)에서 관할 지역내 기존('17년)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제외된 대상자, 자격이 유지된 대상자(자동신청자 및 신규신청 필요자) 등을 구분

- 1) **(자동신청자)** 기존('17년) 대상자 중 '18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17년 신청정보에 변동이 없어 '18년도 사업에 자동신청 처리가 된 자
- 2) **(신규신청자)** 기존('17년) 대상자 중 '18년 지원기준은 충족하나, '17년 신청정보의 변동\* 발생으로 중지 처리가 되어 신규 신청이 필요한 자
  - \* 가구원수 변동, 전출입(가상카드)으로 에너지지원, 고객센터 등 변경 등
  - \* 3년간('15~17년) 에너지이용권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신청서처리에 제외되어 신규 신청 필요
- 3) **(제외 대상자)** '17년에는 대상자였으나, '18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사망, 연령초과 및 임신부 요건 등으로 제외되는 대상자
  - \* 기존('17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18년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연료비) 또는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

#### 2 자동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17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전출입이 발생한 실물카드 대상자

- 대상자에게 자동신청 반영 결과 및 '18년 사업내용 안내 필요
- 정보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
- 자동신청된 이후 가구원수가 변경된 경우는 10월말까지 재신청을 하여야 함

### 3

### 신규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함)

- 가구원수에 변동이 있어 지원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전출입이 발생한 가상카드 대상자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이 변동된 경우
- 대상자 사망(가구원내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 3년간('15~,'17년) 에너지이용권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 신청방식은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통지(시군구) 절차 필요

☞ 대상자에게 '18년 사업내용(지원금액, 사용기간 등)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신청하도록 안내

#### ※ 기존대상자('17년도) 중 신규신청 필요 대상자 처리방법

- 기존 수급자의 정보가 변동(전출입·가구원수 변동 등)된 경우에는 시스템 오픈일에 자동중지\*되어 있으며, 신청을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 ('신청구분'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신규신청」으로 진행)

\* 중지여부 확인 : 「행복e음」-「차세대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 대상자 현황」

### 4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관내 기존('17년) 대상자(업무포탈, 행복e음 참조) 명단을 추출하여, 신규신청이 필요한 기존 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관리
  - \* 전출입,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신규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자동중지' 처리 예정
  - \*\*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에서 기존('17년) 대상자의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17년)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 노력
- 자동신청자가 기존('17년) 신청정보(이용권 종류,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까지 재신청이 완료되도록 조치
  - \* 가구원 수, 이용권선택(가상→실물), 대상자변경은 11월 5일까지만 변경 가능
- 담당공무원은 관내 자동신청자가 '18년 지원내용과 재신청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 필요

## **III. 바우처 발급과 사용**

-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 2. 에너지바우처 발급**
- 3. 에너지바우처 사용**
- 4. 에너지공급사 역할**



#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 1 실물카드(플라스틱 재질)

-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 '15.5월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복지 바우처 제도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舊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舊맘편한카드)'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 국민행복카드사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발급가능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가 필요
  - \*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서 체크·신용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발급 가능

###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 **(체크·신용카드)**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 문의(기존 거래 은행 및 삼성·롯데카드의 경우)를 통해 신청·발급

\* 단, 전화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각 은행 (카드사)별 콜센터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 발급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 단, 대구, 부산, 경남, 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삼성카드	방문 /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방문 /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o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 **(전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로

\*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 장애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자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전용카드 발급처** \*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가상카드는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사 고객센터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가상카드 신청자는 별도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요금차감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탈(담당공무원 로그인 필요), 해당 에너지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 2. 에너지바우처 발급

### 1 발급 전 정보전송

- 결정·통지된 대상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사업단)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사업자(카드사).에너지공급사에게 제공
-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결정·통지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에게 국가바우처(바우처 지원액(포인트)) 생성을 위한 정보 제공
- **(가상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에너지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고객번호, 주소, 지원금액 등)를 에너지공급사에 제공

### 2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전용카드로 발급
  - 발급처 직접 방문시 카드종류(체크·신용)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 **(가상카드)**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내역 확인 가능

### 3 발급관련 유의사항

- **(카드 발급 유의)** 담당공무원은 신청·접수시, 가상카드 대상자가 실물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재발급)** 분실·손상될 경우 발급처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실물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안내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유효기간)** '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18.5.31)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내(카드앞면 참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사용 가능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
- **(에너지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내 타 바우처와의 이용 관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부적격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아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내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만 중단되며 다른 바우처 서비스는 규정대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사용 가능

### 3. 에너지바우처 사용

#### 1 전기(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 **(실물카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온라인·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개별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 단,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사)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
  - \*\* 한전에 전화하여 결제하는 경우 전기요금 중 부분 결제 가능(온라인은 전액결제만 가능)
-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농사용 전기요금은 차감 불가)
  - \*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전기공급사가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

#### 2 도시가스(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 **(실물카드)**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결제.전화(ARS).온라인.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도시가스 공급사가 개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 카드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붙임4 참조) **(특히, 전화결제는 일부 도시가스 회사만 가능)**
-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되며,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도시가스공급사가 발행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표기

#### 3 지역난방(가상카드 사용)

- **(가상카드)** 대상가구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4****등유(실물카드 사용)**

-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 이하 같음)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등유外 타 유류는 바우처 사용 불가)
- \*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5****LPG(실물카드 사용)**

-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카드사에서 LPG판매로 등록된 업종에서만 가능)에서 LPG를 구입
- \* LPG판매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판매소↔카드사간 가맹점 재신고 절차 진행 필요

**6****연탄(실물카드 사용)**

-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4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 연탄수송업자 및 연탄을 취급하는 기타 연료판매점 등은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단, 카드사별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카드사용 공통 유의사항**

-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방식)
- 실물카드 경우, 국민행복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 등록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http://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를 구입·결제(실물카드)하거나 요금차감(가상카드)을 받는 경우,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됨(단, 바우처 금액 소진시 본인 계좌에서 인출됨)
- 기존에 요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실물카드 대상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로 요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실물카드로 결제 필요

**7****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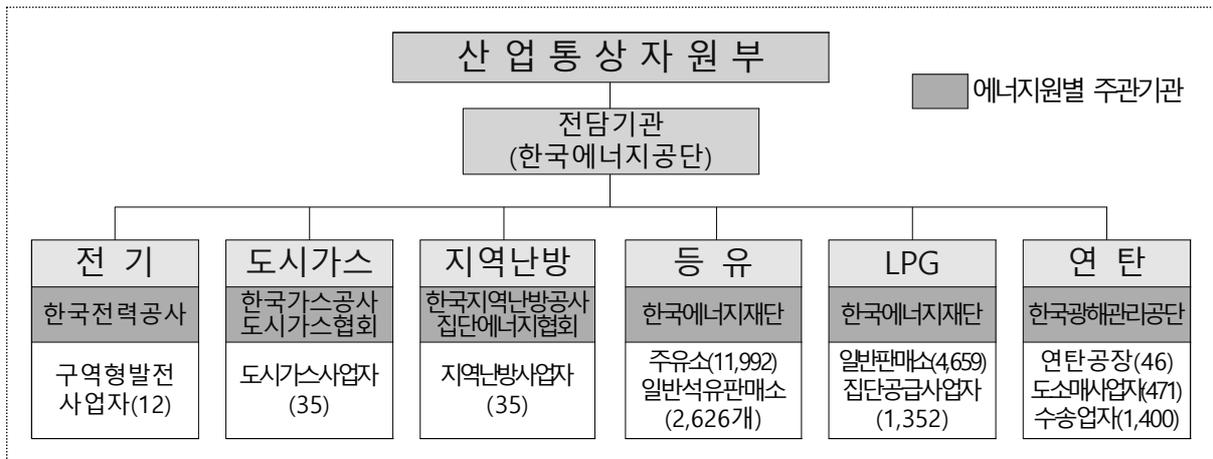
- 실물카드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및 카드 발급이 어려운 자는 주관 기관 또는 지자체 등을 통해 에너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4. 에너지공급사 역할

### 1 에너지공급사 협력체계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공급사로 구성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에서 에너지원별 공급자 총괄 운영·관리, 사후관리 및 홍보·교육 협조 등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사 간의 채널 역할 수행
- (에너지 공급사) 에너지 공급, 공급망 내 전달체계 운영·관리(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교육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 에너지공급사 협력 체계도 >



### 2 에너지공급사 역할

- (실물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너지법 제16조의4)
  - 에너지공급사는 실물카드를 제시한 대상자에게 카드 결제의 거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요구, 가맹점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에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음
- 에너지공급사는 판매를 위장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현금 대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의 에너지 구매 유도 행위 등은 금지
-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 발행 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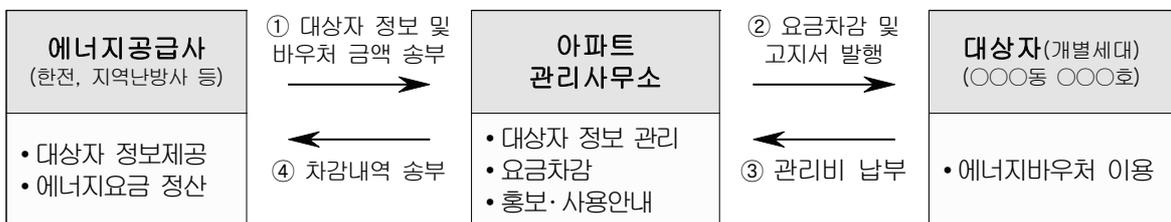
### ○ (가상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
- \* (공급사 역할) 가상카드 대상자 정보관리 및 바우처 지원금액 차감 / 전출시 가상카드 요금차감 불가 조치 / 가상카드 사용 관련 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의 정보연계 및 관리 / 기타 가상카드 사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
- 공급사명(코드), 고객번호 오류 등으로 차감이 잘못 이뤄진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과오 청구를 통한 요금차감 정정 실시(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 3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

- 에너지공급사가 제공한 가상카드 대상자별 에너지요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고 대상자별 차감내역을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송부
- \* 가상카드 대상자 전출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전출사실을 즉시 알리고, 바우처 사용중지를 요청. 단, 아파트관리비 중간정산시 바우처 금액 사용은 불가
-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청 및 사용안내를 적극 협조

### <아파트부문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전기요금할인(한전), 가스요금경감(가스사) 프로세스와 유사
- \*\*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정액할인이 아닌 가구별 사용요금에 따른 차감이 실시되므로, 관리소에서는 각 공급사와 가구별 요금정보를 교환하여 가구별 맞춤 차감 실시(한전아파트관리소 협조)



## IV. 사후 관리

1. 기관별 역할 분담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 1. 기관별 역할분담

## 1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처리
  - \* 과태료 부과(에너지법 제26조)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질문 및 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도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 2 시·군·구, 읍·면·동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회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에너지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1항, 에너지공급사가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

## 3 전담기관 및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 시·군·구(읍·면·동)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점검·조사 등)

### ※ 점검·조사 개요

- 에너지공급 거부사유 발생(민원접수) 및 전담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결제'가 의심되는 에너지공급사에 대해 점검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용 등이 신고된 공급사 점검

## 2.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 1 부정사용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사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바우처 이용·결제 정보 제공(국가바우처→에너지바우처 포탈)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 (에너지공급사)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 2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 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중지 및 환수절차**

-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및 환수처리

구 분	주 체	내 용
조사 및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용권 환수필요사항 현장조사 및 확인서 작성
↓		
입금계좌 안내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에게 입금계좌안내
↓		
환 수	시·군·구(읍·면·동)	▶ 환수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입금
↓		
중 지	시·군·구(읍·면·동)	▶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에너지이용권 사용중지
↓		
통 지	시·군·구(읍·면·동)	▶ 조치내용 대상자에게 통지
↓		
통 보	시·군·구	▶ 광역시도, 공단에 에너지이용권 환수 결과 통보
↓		
통 보	공 단	▶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자체 환수결과 통보

※ 부정사용 관련 중지 및 환수 조치이전 공단과 사전협의 필요



## V.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위탁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3. 이익신청 처리 및 예외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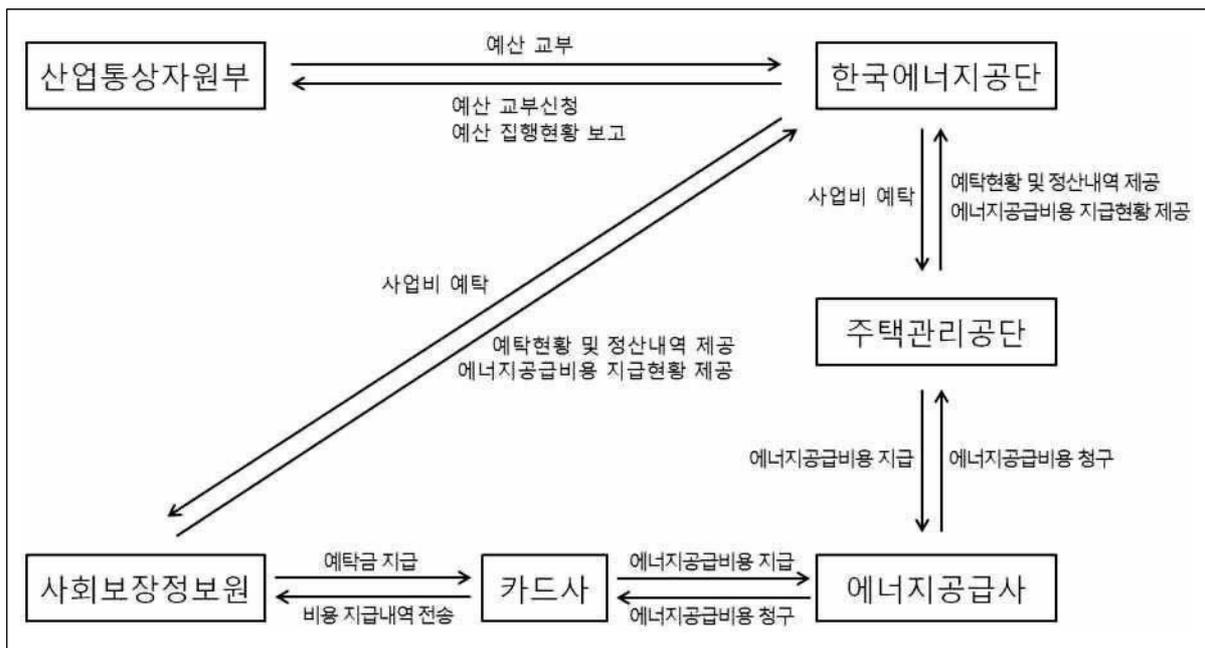


#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 1 위탁주체와 수행기관

- (위탁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 에너지바우처는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 \*\*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주택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차감 등) 사업비는 별도 정산을 통해 관리
- (위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05호)
    - \* 제8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 제9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예산 및 정산 부문 업무처리 흐름도 >



## 2

###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회보장정보원·주택관리공단으로 예탁
- 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사업 비용을 정산
  -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처리
- 주택관리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공급사와 사업 비용을 정산

## 3

### 예탁시기

- 대상자가 일괄(대량)구입 또는 분할 구입 등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주택관리공단에 예탁(사업시행(카드결제승인·요금차감) 이전에 예탁 실시)
- \* 사회보장정보원 및 주택관리공단은 매월 에너지바우처 사용분에 대해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 실시

##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 1 바우처금액 청구

- (청구기관) 에너지공급사
- (실물카드 금액 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 내역이 자동으로 카드사에 청구
  -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에너지 사용금액 결제
- (가상카드 금액 청구) 요금차감방식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제공된 에너지 금액 내역을 근거로 국가바우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카드사·주택관리공단 등에 바우처 사용금액 청구
- (청구기간) 2018. 11월 ~ 2019. 5월말까지 청구·지급
  - (실물카드) 2018. 11. 8 ~ 2019. 5. 31까지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승인된 비용에 대해 청구 가능
  - (가상카드) 2018. 11. 8 ~ 2019. 5. 31까지 발행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한 후 청구 가능

### 2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

- (지급기관)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주택관리공단
- (지급방식) 에너지공급사가 실물카드(카드단말기 결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결제가 발생하여 바우처 금액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에너지공급사에 입금
  - \* 주택관리공단↔에너지공급사간 청구·지급은 기존 아파트관리비 방식에 준하여 실시

-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시, 국가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집행하고, 지급내역을 국가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으로 전송
- \* 카드사 지급내역 및 예탁금 입출금 내역은 국가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공단은 자체 계좌(예탁금을 교부받은 계좌)에서 비용을 집행

### 3

## 비용의 정산

- 카드사와의 비용 정산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
  - \* 카드사와 연계되지 않은 정산 업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월별 예탁금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경유)에 월별 정산내역 통보(또는 시스템상으로 조회토록 조치)
  - \* 정산은 결제 매입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5월 정산은 실물카드 사용만료일까지 결제·승인처리된 건을 포함하여 정산 실시('18년 사업비에서 비용 청구지급 완료)
  - \* 지역별(시·도, 시·군·구별), 기간별(일·주간) 예탁금 집행(이용) 내역은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 종료 후 예탁금 잔액 및 이자를 전담기관에 환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경유)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 \* 단, 바우처 대상자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공급사가 청구한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4

## 과·오 금액 청구 처리방안

- 에너지공급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바우처 금액 과·오 청구 여부 확인
- 과·오 청구 금액 처리 방안
  - (실물카드) 결제 취소 및 추가 매입 등을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오청구 처리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 등)를 실시
  - (가상카드) 요금차감이 누락되거나 과차감된 경우, 익월 등의 에너지요금에서 추가 차감·징수를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 익월 에너지요금 추가 차감·징수처리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 등) 실시

###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지급(환급형 바우처)

#### 1 이의신청 처리

-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접수(읍·면·동)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조치·통지(시·군·구)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이의신청 조치)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처분(처리)되어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사용중지 해제 등을 시행
    - (사용기간 만료후 처리)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이의신청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의신청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사실을 증빙하고 지원금액을 계좌로 입금
- \* 단, '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최종 정산처리된 이후에 이의신청 처분이 변경 결정된 경우, '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에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

#### 2 예외지급 (환급형 바우처)

- (예외지급의 범위) 주거환경, 행정 착오 및 자연,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 신청·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외지급 사유로 판단하여 인정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지급 여부를 결정

○ **(예외지급의 사례)**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중앙난방식 보일러 아파트 등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
-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카드사 청구 및 결제오류,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 **(처리방안)** 해당 가구에서 에너지비용 지출 내역 등 예외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지급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자체 신청내역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계좌입금)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비용 지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카드, 결정통지서 등)

\* 단, 행복e음(읍·면·동에서 예외신청·접수받는 경우)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

○ **(처리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 입금(정보확인이 완료되는 순으로 입금)

## **VI. FAQ (자주 묻는 질문)**

- 1. 에너지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 4.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
- 5. 기타 문의**



## 1. 에너지바우처 제도 · 지원기준 문의

### Q1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저소득 가구 중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난방에너지는 겨울철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주(主) 난방에너지를 의미하며, 그 난방에너지로 연계 사용되는 온수, 취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 Q2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에 지원합니다.
- 다만,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받은자),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또는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를 발급받는 수급자는 제외되며, 가구원 전부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 \*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 중이라도 주민등록표상에 장기입원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신청기간 중 대상자가 퇴원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수준)만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특례자도 인정)가 아닌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 전체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소득액과 재산액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에너지바우처의 기준 '중위소득 40%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수급자를 뜻함

- 본인의 정확한 수급자격 요건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하 읍·면·동)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시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시설급여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시설급여 수급 여부를 모르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설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Q5**

### **그룹홈 등 한 거주지에 여러명의 수급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가구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여러명의 수급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각각의 주민등록표상의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지원대상 조건이 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명의 수급자가 그룹홈 거주지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3인 이상 가구로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연탄쿠폰과 등유나눔카드, 에너지바우처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만약 연탄쿠폰과 등유나눔카드를 반납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탄쿠폰 : 한국광해관리공단 (석연탄지원실 033.902.6521 ~ 3)

\*\* 등유나눔카드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31 ~ 4)

## Q7 노인이나 영유아의 나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2018년말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노인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장애인은 신청시점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임산부는 신청시점에 임신 사실이 확인(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되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Q8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과 [별표4]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9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등급 (1인가구)	2등급 (2인가구)	3등급 (3인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Q10**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세대원수)로 산정됩니다.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읍·면·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기존('17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Q11**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것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겨울철 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7개월('18년 11월 ~ '19년 5월)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총 금액이 12만원(2인가구 기준)입니다.

**Q12**

**겨울철 기간동안 총 12만원이면 난방비로써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써, 특히,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난방비 보조 등을 고려하여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이 많고,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3**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여러 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영유아.장애인이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Q14**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 1명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이상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 86,000원
- \* 예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 120,000원
-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 145,000원
-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 145,000원

**Q15**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난방용 에너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 Q16 에너지바우처는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17 신청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지원금액은 다 같은가요?

- 신청기간내('18.10.17~'19.1월 말) 신청하시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신청하셔도 신청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지원금액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Q18 에너지바우처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면 또는 구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Q19 몸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20**

## 신청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http://www.energyv.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단,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나 가상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한전은 사이버지점 참조 등)하여 고객번호 확인 등록 가능
- 만약,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및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부 확인증,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21**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3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22**

##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명을 받아와야 하나요?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은 대리사실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3**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신분이 확인 가능한 경우)하거나, 법적 보호자, 후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물카드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신용카드는 발급은 불가하며, 14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즉, 14세 미만이라면,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24**

**신청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본 안내서 102p) 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접수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25**

**에너지바우처 카드방식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신용·체크카드 등)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 중 하나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Q26****실물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 실물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카드사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신용등급 및 계좌유무에 따라 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37-38p 참조)
- 만약 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8p 참조)

**Q27****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은행발급 카드(BC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롯데·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연계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시어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Q28****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도 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나요? 어떻게 카드발급이 된 것을 확인하죠?**

- 가상카드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고지서상의 차감

내역 또는 해당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센터, 국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등을 통해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9**

**가상카드를 신청하고 싶은데, 요금고지서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를 통해 정확한 요금차감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차감받기 원하시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 다만, 가상카드 신청자가 요금고지서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를 확인·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 필요)

**Q30**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라도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주소확인이 안되거나, 고지서 상의 주소지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1**

**세입자인데,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여도 상관 없나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입니다. 즉, 요금고지서상의 주소가 주민등록거주지(또는 실거주지)와 같다면 요금고지서상의 명의(계약자)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Q32**

**시스템 접속시 고객번호 검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행복e음 시스템내에 각 에너지공급사의 고객번호DB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및 누락으로, 정상적인 고객번호임에도 검증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은 거주지 주소와 고지서상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고지서상의 고객번호를 가장 우선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시스템상의 고객번호 검증은 참고용입니다)

**Q33**

**1주택 다가구에 거주하는데,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싶어요. 요금고지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개별 가구 단위로 요금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각 가구별로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1개의 고지서로 여러 가구가 나눠서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전기'만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기'부문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1개의 계량기를 쓰다가 분리하는 경우, 고객번호의 변동이 있다면 읍·면·동 재신청을 통해 고객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Q34**

**전기요금고지서 두 개를 받고있는 가구입니다. 둘 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가구당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위한 고객번호는 1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고지서 중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가상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두 개 모두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Q35**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심야전기요금도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야전기보일러가 주 난방에너지원이라면 심야전기 요금 고지서로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산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는 난방에너지원이 아니므로 해당 전기요금고지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36**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고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거주하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고객번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별 고객번호는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고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으시면 더욱 처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는 개별로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의 경우 별도 발급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지참하셔야 합니다.

**Q37**

**도시가스(전기) 요금 연체금액이 있는데, 가상카드를 신청하면 연체금(체납금)부터 결제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전의 연체금은 정산되지 않고, 겨울철에 사용한 난방비만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Q38**

**도시가스(전기) 연체(미납)금으로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도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체(미납)금으로 인해 도시가스 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연체(미납)금 정산 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 신청하시거나, 실물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39**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는 주 난방에너지원을 차감하길 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에너지원 가상카드발급을 위한 다른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시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임을 확실히 인지하고도 차감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Q40**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되어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접수한 날(접수일자 생성)로부터 14일 이내

**Q41**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며, 또다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카드 외에 별도의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발급도 가능합니다.

**Q42**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대상자(수급자)' 명의의 카드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실물카드의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대상자(수급자) 가구원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3p 참조)
- 다만, 대상자의 여건으로 직접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여러장 발급받더라도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3**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난방비(관리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개별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는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전기 및 난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전기요금고지서 및 고객센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되는 1주택 다가구의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대상자가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외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Q44**

**이미 1인가구로 신청했는데, 가구원이 늘어나서 2인가구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신청 이후에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지원요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19년 5월)에는 최초 신청하신 지원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45**

**카드명의자가 별도로 가구독립을 하고, 기존 가구에 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중에 가구(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가구원(세대원) 모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이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이는 인위적으로 가구분리 등을 하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46**

**신청 이후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전출입이 발생해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우선, 신청하신 읍·면·동에 문의하셔서, 접수된 신청정보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정 이전에 전출입이 발생하신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새로운 전입지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47**

**읍·면·동에서 접수를 완료했는데, 대상자가 정보변경을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만약 시군구에서 결정 처리 후에 바우처 송수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에 '결정 취소'후, '반려 처리'를 요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정보변경 후 다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군구에서 바우처 송수신이 완료 되었다면 일부 제한된 정보 수정만 가능합니다.(31p 정보수정 부문 참조)

**Q48**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하나요?**

- 재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카드를 쓰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하셔도 그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Q49**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사망 사실이 행복e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다른 가구원(수급자가 아니어도 됨; 사망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 한 후, 재신청한 가구원이 카드발급처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50**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바우처대상자가 사망했습니다. 요금차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정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다른 가구원(수급자가 아니어도 됨, 사망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51**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하나요?**

- 가상카드 대상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전입지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고객번호가 동일하여도 재신청 필요)
- 가상카드 재신청의 경우에는, 전입지의 고객번호를 증빙할 요금고지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에너지 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 \* 전출입으로 인한 재신청시에는 대상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52**

**전출입 또는 사망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셔서, 남아있는 경우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 또한,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 내에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53**

**실물(가상)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가상(실물)카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 시스템에서 '정보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붙임6 참조)
- 단, 가상→실물카드의 경우에는 변경\*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19-20p 참조)

**Q54**

**'17년 대상자는 '18년에는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출입한 경우는 어떡하죠?**

- 전출입(가상카드에 한함), 사망 등의 변동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가상카드 대상자가 '18년 사업시행 전('18.10월)에 전출입이 발생하였다면,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신규신청을 다시 하셔야합니다. 특히, '가상→실물', '대상자명', '에너지원' 등을 변경하시려면 10월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변경을 위한 재신청이 불가능

## 4. 에너지바우처 사용관련 문의

**Q5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가상카드의 경우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에 발행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이 이뤄집니다.

\* 각 카드방식별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등은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Q56**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57**

**실물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실물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58****가상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서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 등이 차감되게 됩니다.
- 대상자는 익월(또는 익익월) 고지서에서 차감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9****거동이 불편하여 카드 결제를 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나 카드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상카드(요금 차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급작스럽게 카드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로 전화(ARS)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 전기요금 전화결제 : 국번없이 123 (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가능, 구역전기사업자(한전을 제외한 전기회사)는 실물카드 사용 불가)
  - \* 도시가스요금 전화결제 :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이 상이하며, 일부 회사만 ARS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

**Q60****요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가면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은행에서는 전기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현금납부만 가능)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에너지공급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결제 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ARS.온라인.영업소 방문 등을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61****등유, LPG, 연탄을 중복해서 구입할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결제횟수 등에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자유롭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62****실물카드로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결제할 수 없나요?**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5가지 에너지원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물카드는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로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감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초난방에너지원을 다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3****아파트관리비에서 지역난방요금 중에 급탕비와 난방비 둘다 차감되는 건가요?**

- 아파트관리비에서의 지역난방요금은 난방비, 급탕비 순으로 차감되며, 둘다 차감도 가능합니다.

**Q64****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물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업무포탈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에너지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업무포탈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5**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데,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이체를 해지해야하나요?**

- 자동이체는 유지하시되, 자동결제일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결제일은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
- \* 참고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경우)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시면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결제일을 감안한 카드결제가 불편하신 경우는 가상카드를 신청하시어 요금을 차감받으시면 됩니다.(요금 차감은 자동이체와 관계없이 요금이 먼저 차감되고 자동결제됩니다)

**Q66**

**전기요금 가상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도중에 실물카드 발급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동절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7**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 5월 31일 이후의 잔액은 모두 소멸되오니, 기간내 최대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Q68**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한 건가요?**

- 일반 가정에서는 조명 등의 전기사용량과 난방용 전기사용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합니다.

**Q69**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유종 및 해당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야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70**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목재펠릿을 구입 가능한가요?**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1**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난방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사용 가능한가요?**

- 기름(벙커유, 경유 등)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실물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가능하며, 기름연료는 가상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Q72**

**실물카드를 사용하다가 전출입으로 인해 가상카드로 변경발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 시스템에서 '정보수정'을 위한 재신청 기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6 참조)

**Q73**

**11월부터 사용가능한데, 10월분이 청구된 전기요금  
결제가 가능한가요?**

- 실물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결제·승인일 기준으로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0월분이 11월에 청구되었더라도 11월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에도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청구·발행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되므로, 신청을 일찍 하신 분(‘18.11월 이전)들은 10월에 사용된 요금(11월 청구)도 차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단, 각 공급사별로 검침일·청구일 등이 상이하야, 10월에 신청하셨더라도 11월 고지서부터 차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차감일정은 각 공급사 문의 필요)
- 5월에 발행된 고지서 납기일이 6월까지인 경우, 실물카드 대상자분들은 5.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74****실물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실물카드 사용등록을 했는지 확인시기 바랍니다. 실물카드는 발급 후, 카드 등록(일반 체크·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드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여, 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려 한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적은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모르실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를 시도한 에너지공급사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http://www.energyv.or.kr))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중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실물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읍·면·동에 전화하여 정보수정으로 인한 중지가 되어있진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접수→결정·승인을 진행하셔야 실물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Q75****실물카드 카드결제 했는데,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아닌 판매소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계좌에서 사용금액이 인출됩니다. 해결방법은 ①해당 판매소에서 결제 금액 환불 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문의)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재사용 ②해당 판매소가 난방에너지를 판매한다면, 카드사(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여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추후 환불 후 재결제 ③만약 난방에너지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①,②번이 어렵다면 영수증을 보관 후 추후 환급형바우처를 신청(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문의)할 수 있습니다.

**Q76**

**가상카드 신청했는데, 해당 에너지요금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실제 사용한 난방요금이 매우 적으며, 다른 복지할인(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혜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에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로, 지자체 담당공무원께서는 적게 사용하는 수급자가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가상카드 신청 정보(공급사명, 고객번호 등)가 잘못된 경우 차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정보 확인하고 정보수정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77**

**대상자가 도중에 병원입원, 요양(병)원 입소 등으로 사용을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1인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못한 경우, 병원 입원비, 요양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비영수증, 입원비영수증으로 추후 환급형바우처 신청(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문의)이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에 입원했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세대원이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기간 내에 사용가능합니다.

## 5. 기타 문의

Q78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분실·손상 등의 사유로 실물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금융기관 및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79

**실물카드를 받고난 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이거나 접수시스템에서 '완료'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실물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면 즉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단, 카드수령 방식에 따라,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80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시스템상 '완료' 처리), 언제라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 전화·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선택하신 에너지 공급사의 청구일정에 따라 자동 차감 됩니다.
  - \* 결정·통지(시스템상 '완료'처리) 이전에도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결정·통지 이후에 결제하셔야 정상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81**

**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회까지 다시 배송이 가능하며, 끝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각 은행, 카드사별 반송센터에서 카드를 관리하오니 각 은행,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지 않으니 유의)

**Q82**

**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최초 신청.접수 이후 카드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재신청을 통해 다른 가구원이 대상자로 지정되면 변경된 대상자의 명의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실물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자격변동이 없는 '17년 실물카드 대상자(기존 대상자)가 가구내 다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월내에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Q83**

**경로당, 목욕탕, 사찰 등으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카드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실거주지)와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단,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거주지는 가상카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공통서식 제3호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공통서식 제4호	에너지바우처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5호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서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li> <li>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li> <li>3. 임신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임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li>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ol>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li> <li>2. 주민등록표 등본</li> <li>3.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li> <li>4. 임신부 확인증(해당자에 한함)</li> <li>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임신부 확인증,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은 발급 후 사용기간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ARS·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서식 제4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 의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적합/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회수/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 비 서 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공통서식 제6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고 인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 )	
부정 사용자 및 사용 에너지	부 정 사 용 자 보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성 명 (상 호 명)	연 락 처
		발 생 지 역	( ) 시·도 ( ) 시·군·구
	에 너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전 기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 <input type="checkbox"/> 등 유 <input type="checkbox"/> LPG <input type="checkbox"/> 연 탄 <input type="checkbox"/> 기 타( )	
부 정 사 용 내 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재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상자)	성명	<b>홍길동</b>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b>501200-1234567</b>	자택전화	<b>031-260-4333</b>
					휴대전화	<b>010-0000-4333</b>
					전자우편(E-mail)	<b>jsone@naver.com</b>
	주소	<b>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포은아파트 105동 1112호</b>				
대상가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만 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만 6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원수	<input type="checkbox"/> 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명 <input type="checkbox"/> 3명 이상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본인	<b>홍길동</b>	<b>501200-1234567</b>	<b>동거</b>	<b>031-260-4333</b>
	조손	<b>홍기리</b>	<b>100200-3456789</b>	<b>동거</b>	<b>031-260-4333</b>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input type="checkbox"/>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input type="checkbox"/>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이용권 방식 (택1)	<input type="checkbox"/> 실물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상카드(요금차감)
가상카드 선택시 에너지원 선택(택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기 (고객번호: <b>123456715</b> , 전 기 회사명: <b>한국전력공사</b> ) ( <b>105</b> 동, <b>1112</b> 호)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동, 호)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 동, 호)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 [ ]재신청)합니다.

2018년 11월 3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홍길동** (사 **홍길동**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임산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임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 4. 임산부 확인증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시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신청인(대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재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접수일자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처리기간 (접수일자로부터) 14일
---------------------------	---------------------------	-----------------------

신청인(대상자)	※ 성명	①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성명 기입 (대리인 성명 아님)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주민번호 기입 (대리인 주민번호 아님)	※ 자택전화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③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의 정보 입력(전화번호는 둘중 하나는 반드시 기입) (없는 경우, 대리인 또는 가족의 연락처 입력 가능)
	주소	④ 바우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기입 (대리인의 주소 아님)				
대상가구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1~6급) [ ] 영유아(만 6세미만) [ ] 임산부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⑤ 대상자 가구원 중 해당하는 가구원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구원수	[ ] 1명 [ ] 2명 [ ] 3명 이상 ⑥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체크(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⑦ 대상자 본인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함.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정보를 입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거형태	[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이상 거주) [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복지시설 등 기타 ⑧ 해당하는 주거형태에 체크,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를 경우,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체크( )
※ 이용권 방식 (택1)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요금차감) ⑨ 원하는 카드 방식에 체크 (중복체크 불가). 단 가상카드 신청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첨부해야함
※ 가상카드 선택시 에너지원 선택(택1)	[ ] 전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 ( 동, 호)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동, 호)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 동, 호) ⑩ 가상카드 선택시에만 한하여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객번호 및 회사명 입력(관리소가 존재하는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⑪ 신청유형(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을 선택하고, 작성일자 및 성명과 서명을 기입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표기(음영표기)된 곳은 필수 작성 항목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센터(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임산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임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 4. 임산부 확인증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시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가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반드시 서명 필요**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 임 장 (작성에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501200-1234567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포은아파트 105동 1112호

전화번호: 010-0000-4333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동길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화번호: 010-0000-4166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8년 11월 3일

위 임 인: 홍길동 (서홍길동 인)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 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 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 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 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 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별첨 3] 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 ~ 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구분	대 상	특정기호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리포르텐-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테빅병) (G36.0)	V276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소.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57.80)	V168
	조.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69 V126 V170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토.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구. 기타 망막장애	

구분	대 상	특정기호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V209
	누.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루. 심근병증 (I42.0 ~ I42.5)	V127
	무. 모야모야병 (I67.5).	V128
	부.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우.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주.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쿠.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투.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느. 수포성 장애	-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르.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브.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스. 연소성 관절염 (M08.0 ~ M08.3)	V133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 ~ 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 ~ 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푸스 (M32)	V13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 ~ M35.7)	V139
	즈. 강직척추염 (M45)	V140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크. 가족섬증(선종)폴립증(M8220/0, D12.6)	V281
	트. 뼈의 파궤병[변형성 골염] (M88)	V213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 ~ 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장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저복합, 아이젠멘저증후군 (I27.8), 아이젠멘저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구분	대 상	특정기호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 ~ Q26.6)	V150
	비. 무설증 (Q38.3)	V241
	시. 담관의 폐쇄 (Q44.2)	V181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지. 방광외반 (Q64.1)	V227
	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티.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즈-제거스 증후군, 스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 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켈웨거 증후군, 좌지 증후군(Q87.8)	V267

구분	대 상	특정기호
	피.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 알츠하이머병 2형(F00.0) 다.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라.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마.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 피크병(G31.00) 아. 전두측두치매(G31.00) 자.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 루이소체치매(G31.82)	V800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V810

구분	대 상	특정기호
	<p>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p> <p>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나. 알츠하이머병 1형(F00.1)  다.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라.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마.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바.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사.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아. 다발-경색치매(F01.1)  자. 주로 피질성 치매(F01.1)  차.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카.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p>	

**붙임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사명 및 공급사 코드**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전기	01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전기	02	대성산업(전기)	
전기	03	대성에너지(전기)	
전기	04	부산정관에너지(전기)	
전기	05	삼천리(전기)	
전기	06	삼성물산(전기)	
전기	07	JB(전기)	(舊)중부도시가스(전기)
전기	08	GIMCO(전기)	
전기	09	CNCITY에너지(전기)	(舊)충남도시가스(전기)
전기	10	티피피(전기)	
전기	11	한국지역난방공사(전기)	
전기	12	주택관리공단(전기)	
도시가스	21	귀뚜라미에너지	
도시가스	22	강원도시가스	
도시가스	23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24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	25	군산도시가스	
도시가스	26	대륜E&S	
도시가스	27	대성에너지(도시가스)	
도시가스	28	대화도시가스	
도시가스	29	목포도시가스	
도시가스	30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31	삼천리(도시가스)	
도시가스	32	서라벌도시가스	
도시가스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34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35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36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도시가스	37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도시가스	38	에스코	
도시가스	39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	40	전남도시가스	
도시가스	41	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2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43	JB(도시가스)	(舊)중부도시가스(도시가스)
도시가스	44	지에스이	
도시가스	45	참빛도시가스	
도시가스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도시가스	47	참빛원주도시가스	
도시가스	48	참빛충북도시가스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도시가스	49	CNCITY에너지(도시가스)	(舊)충남도시가스(도시가스)
도시가스	50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1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2	해양도시가스	
도시가스	53	제주도시가스	
도시가스	54	주택관리공단(도시가스)	
도시가스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지역난방	60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주관기관
지역난방	61	DS파워	
지역난방	62	GS파워	
지역난방	63	LH공사	
지역난방	64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65	나래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66	내포그린에너지	
지역난방	67	대구그린파워	
지역난방	68	대륜발전	
지역난방	69	대성에너지(지역난방)	
지역난방	70	대전열병합발전	
지역난방	71	대성산업(지역난방)	
지역난방	72	무림파워텍	
지역난방	73	미래엔인천에너지	
지역난방	74	별내에너지	
지역난방	75	부산시청	
지역난방	76	부산정관에너지(지역난방)	
지역난방	77	삼천리(지역난방)	
지역난방	78	수완에너지	
지역난방	79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	80	위례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81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	8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	83	전북집단에너지	
지역난방	84	삼성물산(지역난방)	
지역난방	85	JB(지역난방)	(舊)중부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86	GIMCO(지역난방)	
지역난방	87	청라에너지	
지역난방	88	CNCITY에너지(지역난방)	(舊)충남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90	티피피(지역난방)	
지역난방	91	평택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92	포스메이트	
지역난방	93	한국CES	
지역난방	94	휴세스	
지역난방	95	주택관리공단(지역난방)	

## 붙임4

### 에너지 공급사별 카드 납부 방식 / 고객센터 확인 방법

\* 공급사코드 01~12(전기), 21~55(도시가스), 60~95(지역난방), 공급사 사정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 (2018. 10월 기준)

공급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01	한국전력공사	-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02	대성산업(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3	대성에너지(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4	부산정관에너지(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5	삼천리(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06	삼성물산(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07	JB(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앞장우측상단또는고지서중앙우측 “고객번호”8자리숫자
08	GIMCO(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9	CNCITY에너지(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공금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10	티피피(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가상계좌만허용
11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12	주택관리공단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21	कु투라미에너지	BC 삼성 롯데	0 0 0	- - -	0 0 0	- 0 0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22	강원도시가스	BC 삼성 롯데	0 0 0	0 0 0	0 0 0	0 0 0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 번호 불가, 방문결제 본사에서는 불가)
23	경남에너지	BC 삼성 롯데	0 0 0	0 0 0	0 0 0	0 0 0	‘고객번호’ 2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24	경동도시가스	BC 삼성 롯데	0 0 0	0 0 0	0 0 0	0 0 0	고지서 좌측 “납부번호” 10자리 숫자
25	군산도시가스	BC 삼성 롯데	0 0 0	- - -	0 0 0	0 0 0	고지서 좌측 상단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수용가번호 및 지로번호는 불가) '17.10.25. 고객번호 7자리로 변경, 홈페이지결제가능
26	대륜E&S	BC 삼성 롯데	0 0 0	- - -	0 0 0	0 0 0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지로번호는 불가)

공금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27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에 “ <b>사용계약번호</b> ” 10자리 숫자 (납부자번호도 동일한 번호임) 카드자동이체중 BC는 대구은행만 가능
		삼성	0	-	0	0	
		롯데	0	-	0	0	
28	대화도시가스	BC	0	0	0	0	고지서 좌측상단에 “ <b>고객번호</b> ” 7자리 숫자
		삼성	0	0	-	-	
		롯데	0	0	0	0	
29	목포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왼쪽상단에 “ <b>고객번호</b> ” 13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0	
30	부산도시가스	BC	0	-	0	0	“ <b>납입자번호 8자리</b> ”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31	삼천리(도시가스)	BC	0	0	0	0	고지서 좌측 상단에 적색 박스로 되어 있는 “ <b>납부자번호</b> ” 9자리 숫자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32	서라벌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좌측 상단에 “ <b>고객번호</b> ” 8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0	
33	서울도시가스	BC	0	0	0	0	고지서 좌측 상단 “ <b>사용계약번호</b> ” 6으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1로 시작하는 고객번호는 불가)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34	미래엔서해에너지	BC	0	-	0	0	고지서 우측 “ <b>납부자번호</b> ” 13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0	
35	대성정에너지	BC	0	-	0	-	고지서 좌측하단 가운데 “ <b>사용계약번호</b> ” 10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	

공금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36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BC	0	0	0	0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 <b>납입자번호</b> ”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37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BC	0	0	0	0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 <b>납입자번호</b> ”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38	에스코	BC	0	-	0	-	고지서 좌측 상단에 “ <b>납입자번호</b> ” 10자리 숫자 (금융기관용 고지서의 경우, 우측중앙에 “ <b>전자납부번호</b> ” 10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	
39	인천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좌측상단 “ <b>고객번호</b> ” 7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0	전남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 <b>납입자번호</b> ” 8자리 숫자 (홈페이 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1	전북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좌측 상단에 “ <b>고객납부번호</b> ” 10자리 숫자 (세대번호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2	전북에너지서비스	BC	0	-	0	0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 <b>납입자번호</b> ” 8자리 숫자 (홈페이지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3	JB (도시가스)	BC	0	0	0	0	고지서 앞장의 중앙에 “ <b>고객번호</b> ” 7자리 숫자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44	지에스이	BC	0	-	0	0	고지서 좌측 상단에 “ <b>고객번호</b> ” 9자리 숫자
		삼성	0	-	0	0	
		롯데	0	-	0	0	

공금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45	참빛도시가스	BC	0	-	0	0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고지서 상단 우측 등 고지서내 3군데 표기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BC	0	-	0	0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7	참빛원주도시가스	BC	0	-	0	0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8	참빛충북도시가스	BC	0	-	0	0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49	CNCITY에너지 (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우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50	충청에너지서비스	BC	0	0	0	0	고지서 가운데 왼쪽 부분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삼성	0	0	0	0	
		롯데	0	0	0	0	
51	코원에너지서비스	BC	0	-	0	0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52	해양도시가스	BC	0	-	0	0	고지서 상단에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100-****-*****, 1로 시작하는 10자리)
		삼성	0	-	0	0	
		롯데	0	-	0	0	
53	제주도시가스	BC	0	0	-	0	고지서 우측상단에 “고객납부번호” 7자리 숫자
		삼성	0	0	-	0	
		롯데	0	0	-	0	

공급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54	주택관리공단 (도시가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BC	0	-	0	0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0	-	0	0		
		롯데	0	-	0	0		
60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1	D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5자리 또는 6자리 숫자
62	G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5자리 숫자
63	내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4	서울에너지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7자리 숫자
65	나래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6	내포그린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1자리 숫자
67	대구그린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68	대륜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69	대성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0	대전열병합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1	대성산업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2	무림파워텍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73	미래엔인천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4	별내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75	부산시청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6	부산정관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7	삼천리(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78	수완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79	안산도시개발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하단의 “사용자번호” 9자리 숫자 (‘8’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80	위례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81	인천공항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7자리숫자 (‘IAE’로 시작)
82	인천종합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83	전북집단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4자리 숫자
84	삼성물산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85	JB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앞장 우측상단 또는고지서 중앙우측 “고객번호”8자리숫자
86	GIMCO(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87	청라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사용자번호)” 12자리 숫자 고지서중앙의사용자현황,고지서하단지번호아래
88	CNCITY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카드사명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90	티피피(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91	평택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92	포스메이트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93	한국CES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 "사용자명(코드)"	6자리
94	휴세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95	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너지법 [법률 제12931호, 2014.12.30, 일부개정]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37호, 2016.10.4,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37호, 2016.10.4,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2호, 2016.10.18, 일부개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							

법	시	행	규	칙
<p>법</p>	<p>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5세 이상의 사람</li> <li>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li> <li>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li> </ol> <p>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li> </ol> <p>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 유를 지원받는 경우</p> <p>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p> <p>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p> <p>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 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p> <p>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p>			

법	률	시	행	규	칙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u>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에너지 공급 현황</p> <p>2. 에너지 이용 현황</p> <p>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p>	<p>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p> <p>나. 주민등록표 등본</p> <p>다. 장애인 증명서</p> <p>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p> <p>2.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p> <p>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p>	<p>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p>			

법	시	행	시	행	규	칙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li> <li>2. 주민등록표 등본(제13조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li> <li>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li> <li>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li> <li>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li> <li>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li> </ol> </li> </ol>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p> <p>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li> <li>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li> <li>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li> <li>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li> <li>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li> </ol> </li> </ol>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한 경우</li> <li>2.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li> <li>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li> </ol>	

법	률	시	행	규	칙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p> <p>2.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p> <p>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법	시	시	규	칙
<p>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p> <p>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p> <p>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법	시	시	시
률	행	행	규
칙	형	행	칙
<p>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p> <p>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p> <p>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p> <p>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p>		

법	시	시	규	칙
<p>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li> <li>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li> </ol> <p>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p>			

법	률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친제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li> </ol>	<p>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li> </ol>		
<p>제17조 ~ 제20조 (생략)</p>					

법	시	행	규	척
<p>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달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li> <li>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li> <li>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li> <li>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li> <li>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li> </ol>			

법	률	시	행	규	칙
<p>제2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p>		<p>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p> <p>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p> <p>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p> <p>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담기관에 위탁한다.</p> <p>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p> <p>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p> <p>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p> <p>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p> <p>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 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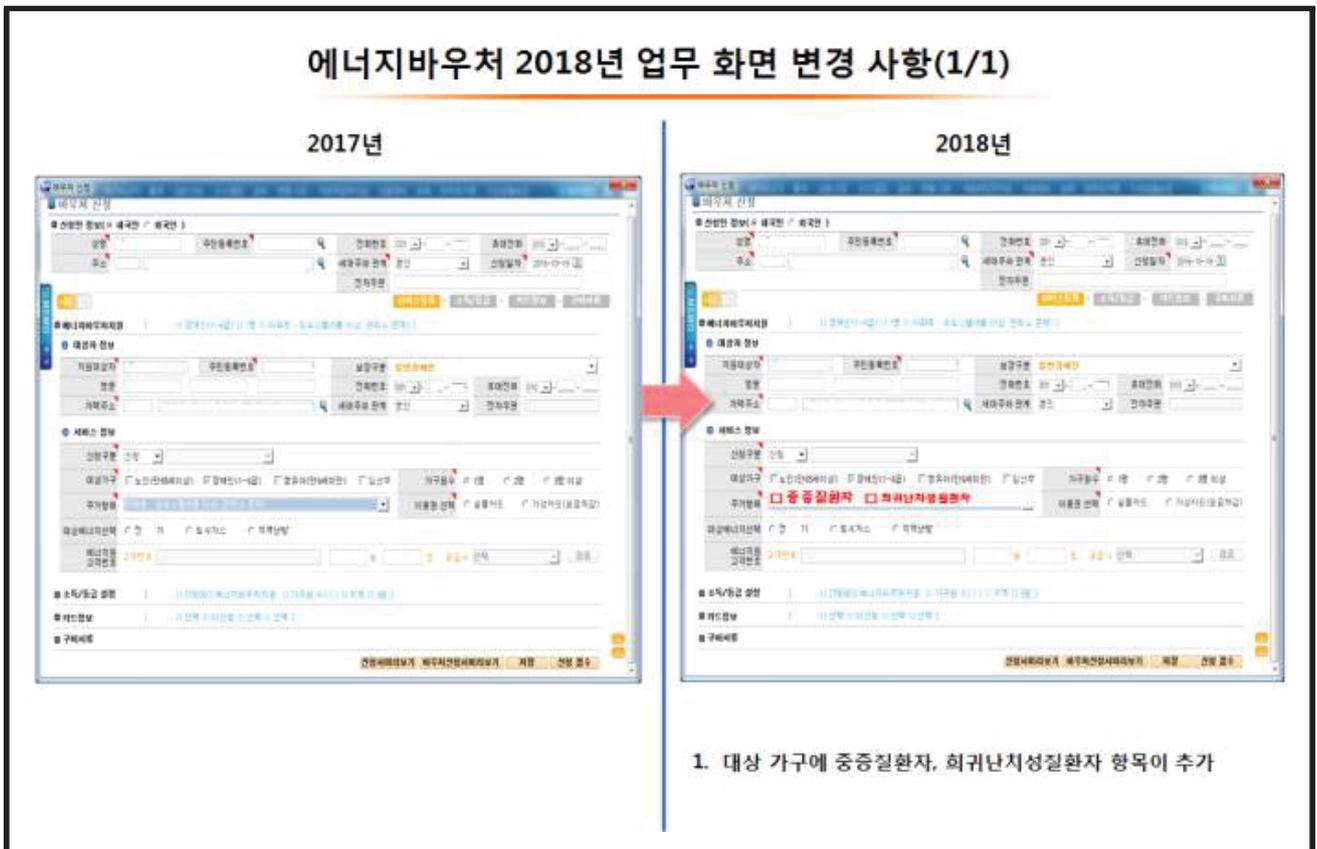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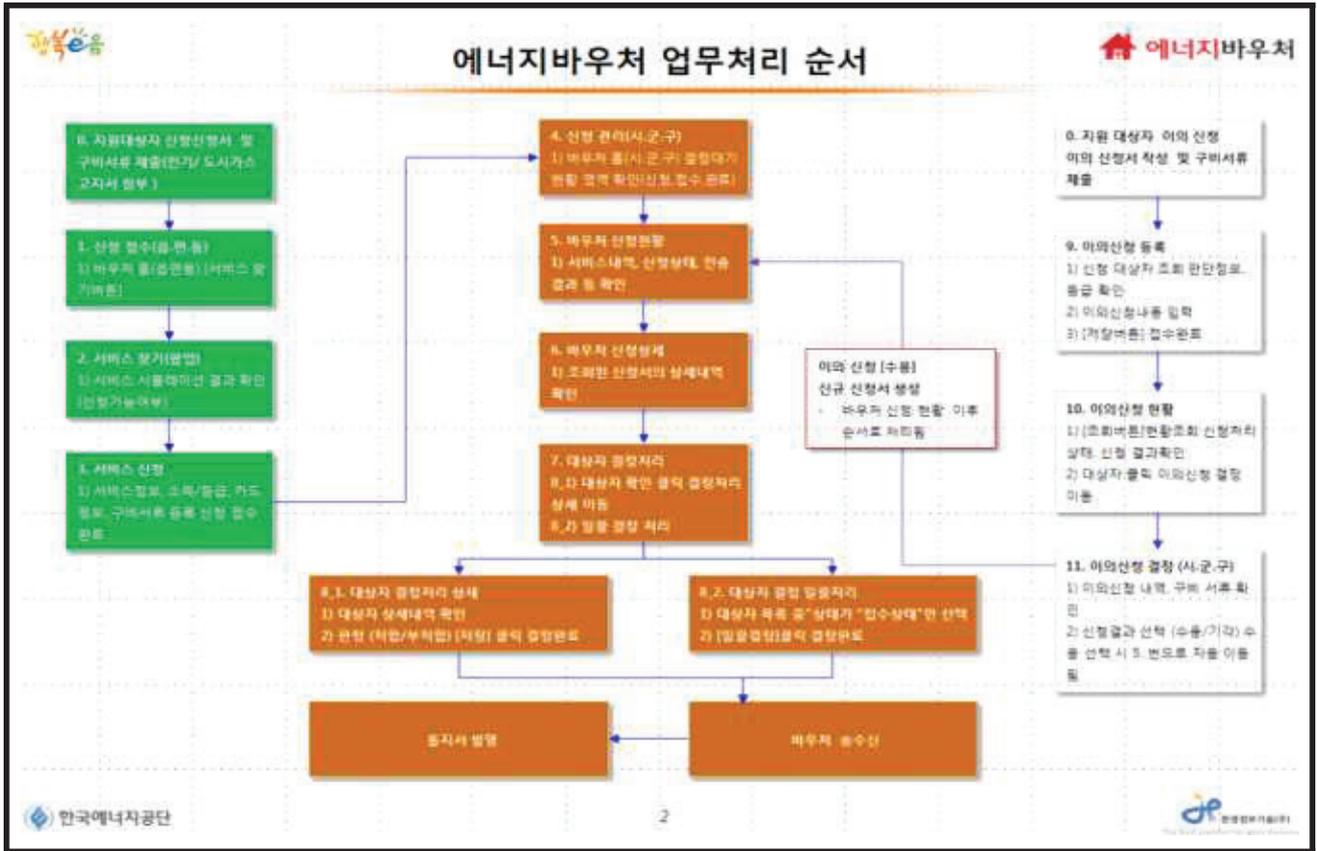
법	시	행	규	칙
<p>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원의 임직원</li> <li>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li> </ol> <p>제2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li> <li>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li> </ol>	<p>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p>			

법	률	시	행	형	규	칙
<p>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p> <p>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p>	<p>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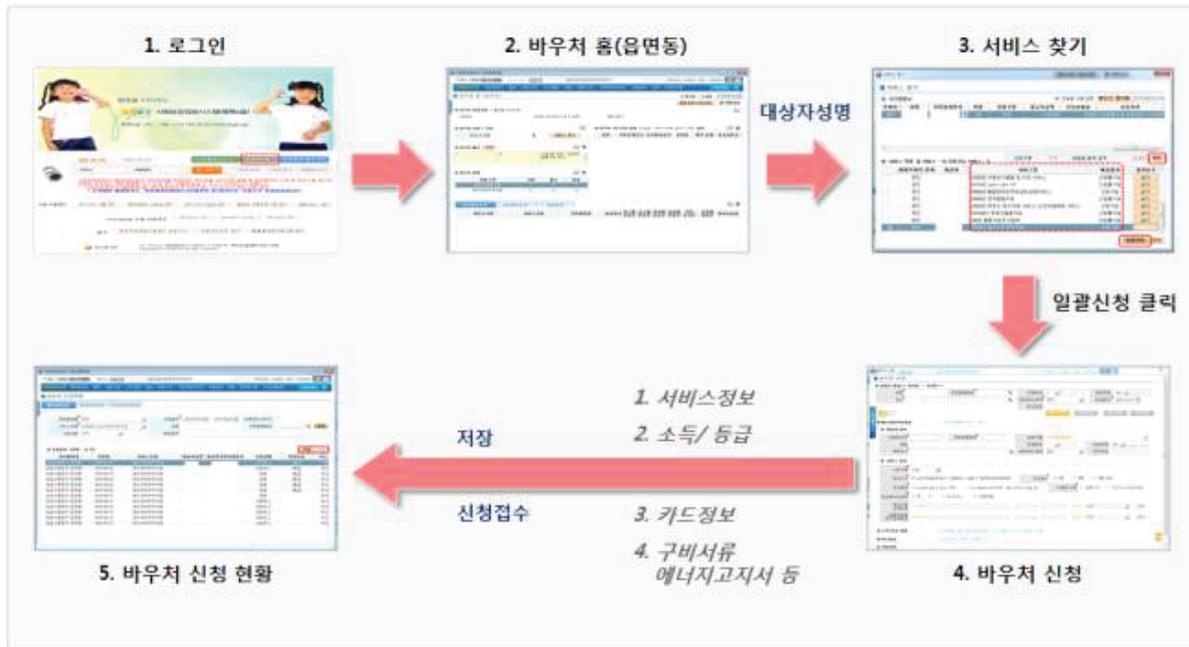
## 차례

1. 에너지바우처 업무처리 순서
2. 에너지바우처 2018년 업무 화면 변경 사항
3.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메뉴얼
4.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업무 별 처리 순서
5. 신청구분별 변경 선택 항목 상세 설명
6. 행복e음 로그인 - 공통
  - 로그인
  - 로그인 후 첫 페이지
  - 차세대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7. 신청,접수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홈(읍면동)
  - 서비스 찾기
  - 바우처 신청 - 신청 화면
  - 바우처 신청 - 신청 화면 기능 설명
  - 바우처 신청 - "소득/등급"영역
  - 바우처 신청 - 카드 정보 등록 영역
  - 바우처 신청 - "구비서류" 등록, 서비스 신청 접수
8. 바우처 신청현황(읍면동)
  - 바우처 신청 현황
  -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9. 중지 신청(읍면동, 시군구) - 정보수정 필요 시
  - 중지신청
  - 송수신 관리 -중지환급
10. 재신청(사양,전입, 정보수정)
  - 재신청 (정보 수정 시 - 중지처리를 하고 진행가능) 11월 5일까지
  - 재신청 (정보수정-가구원수 변경)
  - 재신청 (정보수정-에너지원 변경)
  - 재신청 (정보수정-대상자 변경)
  - 재신청 (정보 수정 시 - 중지처리를 하고 진행가능) 11월 8일부터
11. 대상자 결정 처리(시군구)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조회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상세 정보 확인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일괄 결정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12.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대상자 결정 처리 이후
  - 송수신 관리
13. 동지서 발행(읍면동, 시군구)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 동지서발행
14. 바우처 대상자 현황(읍면동, 시군구)
  - 바우처 대상자현황
15. 전달사항 및 결정대기 현황 - 바우처 홈(시군구)
  - 바우처 홈(시군구)
16. 이의 신청(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등록(읍면동, 시군구 가능)
  - 이의신청 현황(시군구)
  - 이의신청 결정(시군구만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매뉴얼(1/2)

### 읍면동 담당자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매뉴얼(2/2)

### 시군구 담당자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업무 별 처리 순서(1/1)

업무 구분	대상자	업무 순서 및 해당 페이지
신규신청	1. '18년 신규 대상자 2. 기존 대상자('17년도)중 가구원수 변동, 전출입 가 상카드 대상자 등	1. 신청 및 접수 : p15 ~ p22 2. 대상자결정처리 : p35 ~ p37 3. 송수신관리 : p39 4. 통지서발행 : p41
중지 신청	1.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중지 처리 후 재신청) 2.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 전출입, 사망의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됨	1. 중지환급신청 : p27 2. 송수신관리 : p28
정보수정에 의한 재신청	1. 정보 수정에 의한 재신청 대상자 • 신청자 중에서 정보수정을 원하는 경우 • 단, <b>이용권(가상→실물)변경, 가구원수, 대상자 변                      경은 11월 5일까지 가능</b> • 재신청은 중지 처리이후 진행 가능	1. 재신청(정보수정) 및 접수 : p30 ~ p33 2. 대상자결정처리 : p35 ~ p37 3. 송수신관리 : p39 4. 통지서발행 : p41

##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1/3)

The screenshot shows the '바우처 신청' (Voucher Application) form. A red box highlights the '서비스 정보' (Service Information) section, specifically the '대상가구' (Target Household) dropdown menu. A callout box with a red border contains the following text:

신청 구분 등의 선택된 항목에 따라 세부 메뉴의  
 활성, 비활성화가 됩니다.

\* 다음 페이지 참고 →

The dropdown menu in the screenshot shows the following options: 정보변경구분선택, 이용권 선택(가상→실물), 주거 형태, 고액번호, 공금사, 가구원수, 이용권 선택(가상→실물), 에너지권, 대상자변경.

###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2/3)

신청구분	세부구분 1	세부구분 2	세부구분 3	관련 항목 및 기능	
신청	대상가구			임산부 항목 외 임의 선택 불가 (임산부가 시스템상 확인 불가시 임산부 항목 선택 및 구비서류 첨부 필요)	
	주거형태			주거형태 활성화	
	이용권선택			이용권선택 활성화	
	대상에너지선택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에너지원고객번호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재신청	정보수정	이용권 선택(실물→가상)	(이용권 선택 활성화 → 가상카드 클릭 →)	주거형태, 대상에너지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공급사 활성화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동/호수 입력 필수
			다가구·다세대주택(1개 주소에 2가구이상 거주)		동/호수 선택 입력
			연립주택·단독주택(1개 주소에 1가구만 거주)		동/호수 선택 입력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동/호수 선택 입력
			종교·복지시설 등 기타		동/호수 선택 입력

###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3/3)

신청구분	세부구분 1	세부구분 2	세부구분 3	관련 항목 및 기능
재신청	정보수정	고객번호		고객번호 활성화
		공급사		공급사 활성화
		에너지원변경		대상에너지 선택 활성화
		이용권 선택(가상→실물)	(이용권 선택 활성화 → 실물카드 클릭 시 →)	대상에너지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공급사 비활성화
		가구원수		
		대상자변경		

- > 붉은색 상자 내의 항목은 2018년 11월 6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단, 사망에 따른 자동종지 후 대상자 변경은 5월말 까지 가능합니다.



## [공통] 행복e음 로그인

### 행복e음 메뉴 공통(1/3)

- 로그인

The screenshot shows the login page for '행복e음' (Happy eum). At the top, it says '행복을 이어주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and provides the URL 'http://10.184.26.6/swebn/login.asp'. Below this are several buttons: '일반 로그인', '전문가 로그인', '이차원사입업링크', '이차원이동로그', and '복지영상 16도구'. A red box highlights the '로그인' button. A callout box with a red border and arrow points to this button, containing the text: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소속선택 팝업창이 열립니다. 소속을 선택해주세요.' To the right, an inset window shows a '소속선택' (Affiliation Selection) pop-up menu with options like '필수소속' and '교육복지콜리시스(+)센터'. Below the pop-up, it says '원하는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and has a '확인'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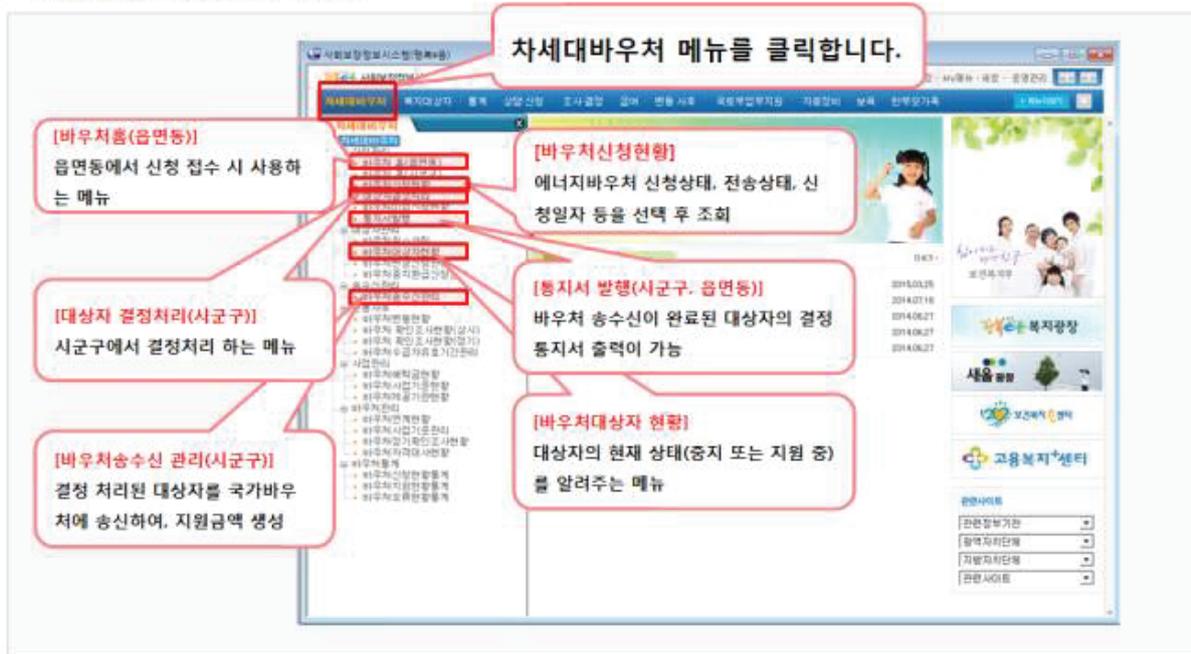
## 행복e음 메뉴 공통(2/3)

### 로그인 후 첫 페이지



## 행복e음 메뉴 공통(3/3)

### 차세대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 [읍면동] 신규신청 · 접수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서비스 찾기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용(읍면동) > 서비스찾기

신청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신청구분	필수특공액	건강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46	지역		0입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4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녀			12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서비스명	예상결과	결과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008003] 발달장애인 부모살리상담서비스	신청가능	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008002] 언어발달지원	신청불가능	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100202] 어르신 장서지원 서비스-노인자살예방 서비스	신청불가능	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010715] 아동성소년살리지원서비스	신청불가능	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GHA001] 가져귀 및 제조분류 지원사업	신청가능	보기
<input type="checkbox"/>	본인	[HWG001]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가능	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2003] 활동지원추가급여	신청불가능	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TE001] 에너지바우처지원	신청가능	보기

#### 상세설명

- ❖ 바우처 신청 서비스 찾기 (팝업)화면
- 1. [건강보험료조회] 클릭후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 ✓ 건강보험료가 조회 안되는 경우(대부분의수급자)
  - 1-1. [건강보험료수동입력] 체크
  - 1-2. [신청구분]을 "지역"으로 선택
  - 1-3. 건강보험료 항목에 "0"을 입력합니다.
- 2. 대상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 신청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세대원중 누구나 지정 가능) 직권신청의 경우는 대상자를 신청자로 지정합니다.
- 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준 정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상하여 보여줍니다. 예상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청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신청불가능으로 표시되어도 신청 등록을 할 수 있음)**
- 4. 에너지바우처지원 서비스를 선택(체크)합니다.
- 5. [일괄신청]을 클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 신청화면(1/2)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서비스 신청화면(1)

1.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는 서비스 찾기 [팝업화면]에서 조회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표시 됩니다
2. 신청구분은 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3. 대상 가구 및 가구 원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택되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체크(V)하고 증빙서류(25p참고)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4. 주거형태는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아파트·오피스텔을 선택 할 경우 [에너지원 고객번호]에 등,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 신청화면(2/2)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서비스 신청화면(2)

5. 이용권선택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 선택합니다.(주거형태와 관계없이 실물카드, 가상카드 선택 가능 함)
  - 단, 에너지비용이 관리비 형태로 청구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물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선택시>
6. 대상에너지선택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하나의 에너지원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7. 에너지원 고객번호란의 고객번호, 공급사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고지서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8.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합니다.
  - 입력한 고객번호가 자리수 등의 검증에 불일치할 경우 정상 신청불가(재확인필요)
  -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주소가 없더라도 고객번호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신청 화면 기능 설명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용(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 바우처 신청 화면 기능 설명(1)

#### ✓ 기능설명

1. 우측 상단에는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서비스등록, 소득/등급, 카드정보, 구비서류 화면으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2. 좌측의 버튼으로 화면을 펼쳐보기, 접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좌측 하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화면이 펼쳐집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소득/등급"영역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용(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 바우처 신청 메뉴의 "소득/등급"영역 화면

1. [등급판정] 버튼을 클릭하여 바우처 등급을 확정합니다.

#### ✓ 기능설명

- 가구원수 외의 조건은 불가하며, 추가/삭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 [판정조건서보기] 버튼을 클릭시 대상자등급 판정시의 판정조건을 보여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카드 정보 등록 영역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메뉴의 카드정보등록 영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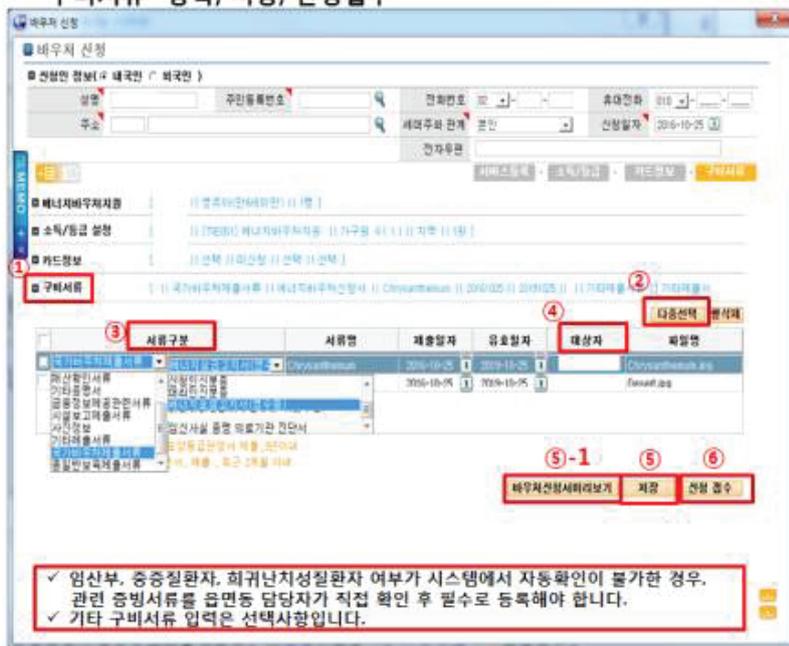
1. 카드 발급 현황을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신청여부는 방문 발급으로 표시됩니다.(카드발급은 수급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카드신청 여부메 미신청으로 표기됩니다.

3. 신청카드사 선택은 불가합니다.(방문발급 원칙)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신청접수 "구비서류" 등록, 저장, 신청접수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등록및 신청 접수

1. [구비서류]를 클릭하여 등록화면을 펼칩니다.
2. [다중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상카드 에너지요금지서 등록) [서류구분]에서 [국가바우처제출서류], [에너지요금지서(영수증)]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 3-1.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 구비서류 등록) [서류구분]에서 [기타증명서],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4. [대상자]항목에서 등록된 구비서류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5.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신청서는바우처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음페이지 참조)
- 5-1.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버튼은 저장 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접수] 클릭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 [공통] 바우처 신청현황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공통] 바우처 신청 현황 확인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신청 현황

####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현황 조회 화면
  -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신청현황]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선택, [신청일자]와 [신청상태] 등을 선택 후 [조회] 클릭하여 바우처 신청현황을 조회합니다.
  - 2. 조회된 내역을 더를 클릭하면 신청서의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다음페이지 참조)
  - 3. 신청상태가 "신청"인 경우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태설명]**
- 신청-읍면동에서 [저장] 클릭 후 미접수상태(수정가능)
  - 접수-읍면동에서[신청접수] 클릭 후 접수완료상태 (수정불가)
  - 완성: 시군구에서 결정된 상태
  - 응답대기: 신청정보 송신(시군구) 후, 바우처 생성 대기 상태
  - 완료: 바우처 생성 및 모든 절차 완료 상태(휴지서 출력가능)
  - 신청취소: 시군구에서 신청을 취소한 상태(다시 정보 입력필요)
- ✓ 기능설명
- 조회 결과의 데이터를 [엑셀버튼] 을 클릭하여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50건 조회이며 [다음버튼] 을 누르면 다음 조회내역이 화면에 추가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공통]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 상세설명

-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조회/수정하는 상세 보기 화면(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1. 신청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표시하고 [신청자]/ [대상자]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기능설명
  - 상세보기 화면에서도 신청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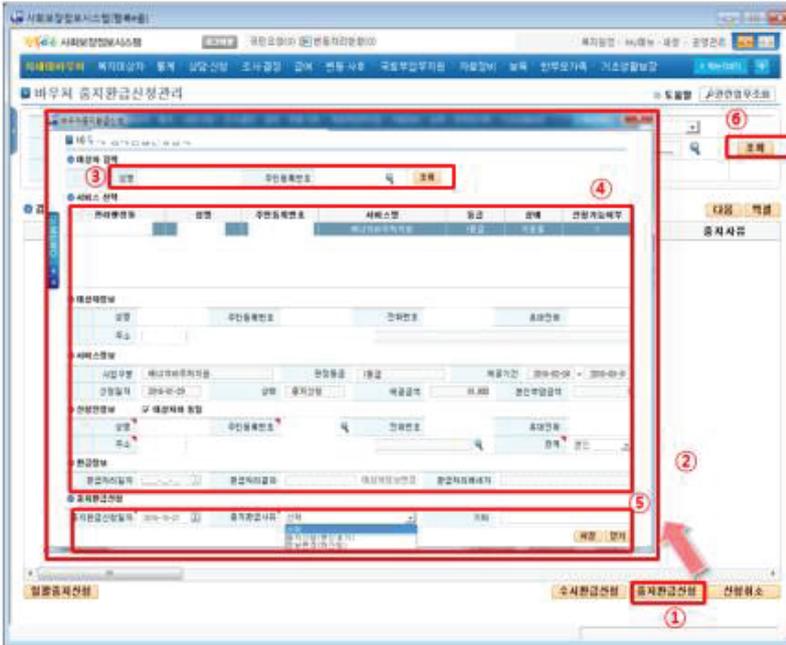


**[읍면동, 시군구] 중지 신청 및 전송**  
- 정보수정(재신청) 또는 본인포기 중지 시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 담당자] 중지 신청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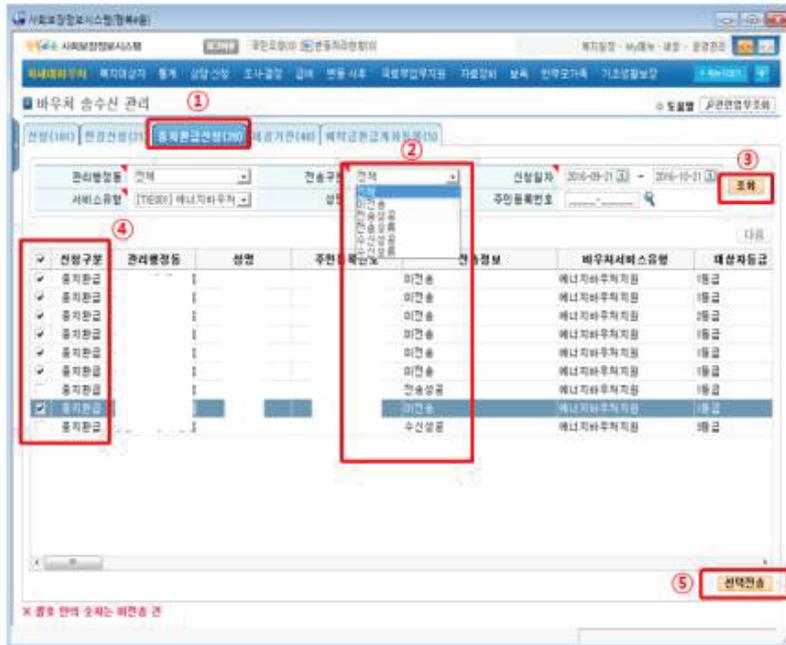
### 상세설명

- ❖ 지원 중인 서비스를 중지할 때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관리]-[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중지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바우처 중지환급신청등록] 화면이 뜹니다.
- 3. 검색할 대상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 4. 현재 지원중인 서비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 5. [중지환급신청] 항목을 선택(정보변경(재신청) 또는 중지신청(본인포기))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바우처 중지환급신청관리]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중지 신청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망, 전업 중지처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처리 되므로 담당공무원 임의로 중지 할 수 없습니다.
- (장동중지) 사망신고후 익일 7시35분, 전업신고후 익일 18시5분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중지환급 신청건 전송처리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 상세설명

- ❖ 중지환급신청의 경우에도 바우처 송수신을 완료하여야 '중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 1. [바우처송수신관리]화면에서 [중지환급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 2. [전송구분]에서 "미전송" 또는 "전송오류"를 선택하여 전송이 필요한 목록을 불러옵니다.
-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정보를 조회합니다.
- 4. [신청구분]이 '중지환급'로 되어있는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 5. [선택전송]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바우처 금액이 생성됩니다.
- (주의) [전송정보]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이 되어야 중지처리가 완료됨



# [읍면동] 재신청(정보수정)

## -재신청은 중지이후 진행 가능

신청 후, 변경가능정보	변경가능기간
·이용권 변경(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가구원수 변경 ·대상자 변경(단순변경)	2018. 10. 17 ~ <b>2018. 11. 5</b>
·이용권 변경(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 ·주거형태 변경 ·고객번호 변경 ·에너지원 변경 ·공급사 변경 ·대상자 변경(2인 이상 가구 대상자 사망 시)	2018. 10. 17 ~ <b>2019. 5. 31</b>

\* 사망에 따른 자동중지 후 대상자변경은 5월말까지 가능  
**(자동중지) 사망신고후 익일 7시35분, 전입신고후 익일 18시5분**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 [읍면동 담당자] 재신청

※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중지처리(32p) 후 진행가능  
 전입 및 사망은 자동중지이후 재신청 가능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바우처신청

### 상세설명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의 재신청(정보수정) 화면(링크) 오류 등 대상자의 정보를 수정 해야 하는 경우, 중지처리를 진행(32page 참조)한 후 재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읍면동)]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대상자를 조회 선택(21~22P 참조)합니다.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수정]이 선택됩니다.

2. [변경선택]버튼한후, [정보변경구분선택]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18.10.17~11.5까지 변경가능 정보)

✓ 가구원수, 이용권선택(가상->실물)

✓ 대상자변경

➢ (18.10.17~19.5.31까지 변경가능 정보)

✓ 이용권선택(실물->가상)

✓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재신청(가구원수 변경)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상세설명

#### ❖ 재신청(정보수정)-가구원수 변경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수정]이 선택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3-1. [가구원수]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기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저장]버튼을 클릭후, 6.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가구원수] 변경은 이전에 신청되었던 가구원을 현재 시점의 동분상 가구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 가구원 변경으로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기존 신청 되었던 등급이 변경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담당자] 재신청(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상세설명

#### ❖ 재신청(정보수정)-에너지원 변경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수정]이 선택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3-1. [에너지원]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에너지선택]에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선택하고, 에너지고객번호, 공급사 등의 변경정보를 입력한 후 4-1.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기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저장]버튼을 클릭후, 7.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음면동담당자] 재신청(대상자 변경)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음면동) > 서비스찾기



###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대상자 변경

✓ [바우처홈(음면동)]화면에서 [바우처 서비스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인적정보조회] 화면에 대상자가 조회 됩니다.

1.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변경할 대상자를 [대상자] 항목에서 변경 체크합니다.
- \*\* (주의)변경할 대상자 생계의료수급자여야 함
2.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수정]이 선택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 3-1. [대상자변경]을 선택하고, 3-2.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전 대상자]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 확인합니다.
5.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기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저장]버튼을 클릭후, 7.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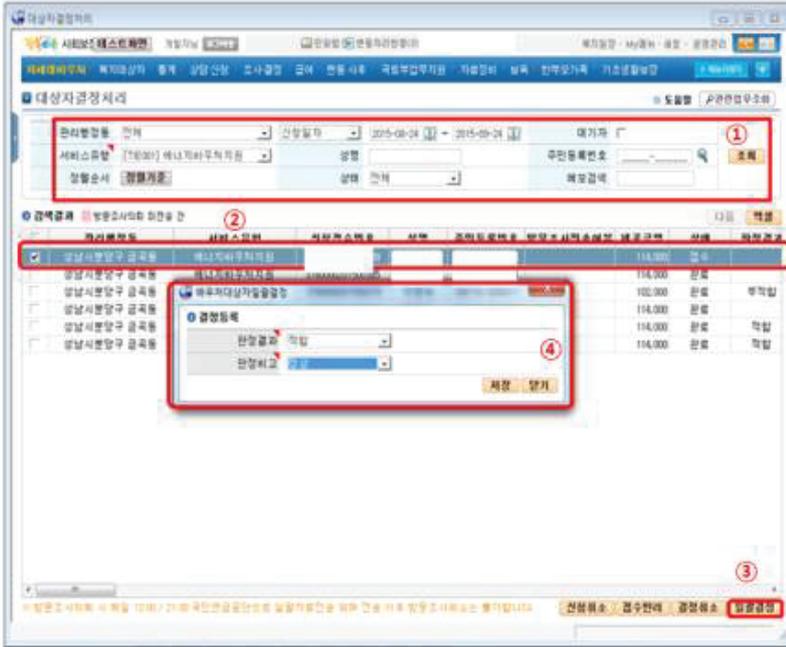


## [시군구] 대상자 결정 처리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대상자 결정 처리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처리 대상자를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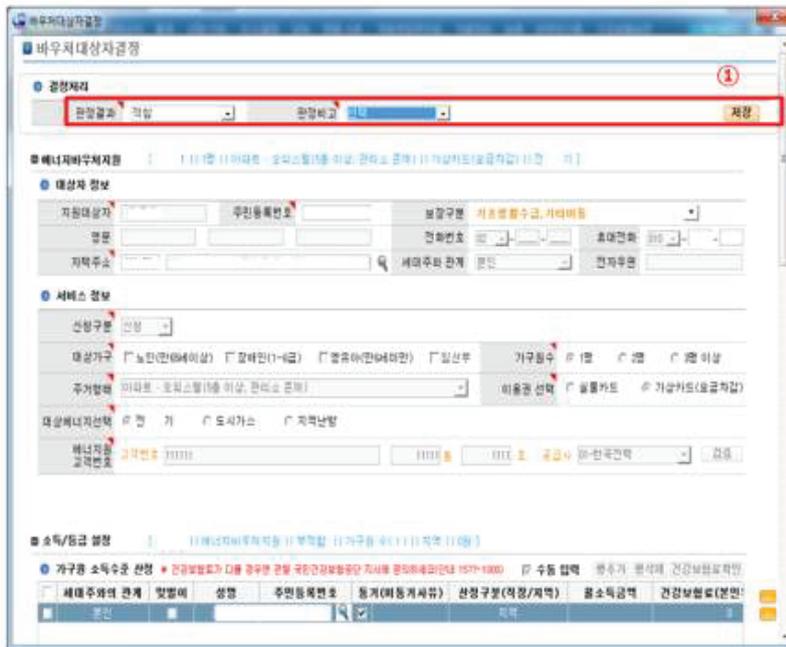
1.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화면에 접속합니다.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태]가 접수인 결정 대상자를 체크(V)후 [일괄결정] 버튼 누릅니다.
3. [바우처대상자일괄결정] 팝업에서 [판정결과]와 [판정비고]의 내용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조회된 결과 중 확인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상자 결정상태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참고)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결정 처리 상세 정보 확인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 처리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1. [바우처 대상자 결정]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 후, [결정처리] 영역에서 [판정결과], [판정비고]를 선택하고 [저장] 클릭 하면 결정처리가 완료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The screenshot shows the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Voucher Recipient Decision Processing) screen. At the top,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관리현황' (Management Status) and '신청일자' (Application Date) with a date range from 2018-09-01 to 2018-10-31. Below the filters is a table with columns: '관리현황', '서비스유형', '신청접수번호', '신청', '주원등록번호', '발행호사건번호', '제공금액', '잔액', and '관리결과'. The table lists several entries for '에너지바우처지원' (Energy Voucher Support) with amounts ranging from 116,000 to 194,000.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신청취소' (Application Cancellation), '접수반려' (Application Return), '결정취소' (Decision Cancellation), and '발행관리' (Issuance Management).

### 상세설명

❖ 신청정보 오류 등 취소 및 반려가 필요한 경우

1.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된 결과 중 취소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정 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 시 해당 정보가 완전히 삭제됨(재등록은 읍면동에서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해야함)
3. 조회된 결과 중 반려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접수반려] 클릭 - 결정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접수 반려 시 해당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읍면동 접수직전(저장상태)으로 회귀
4. [결정취소]는 결정 직후, 바우처 송수신 관리메뉴에서 송수신 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결정취소 후, [신청취소] 또는 [접수반려] 가능

• 바우처 송수신 이후에는 취소 및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 [시군구] 바우처 송수신 관리

### - 대상자 결정 처리 이후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대상으로 결정된 자 전송 처리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 상세설명

❖ 차세대 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의 바우처 송수신관리를 선택할 때 나오는 화면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바우처송수신관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신청] 또는 [증지환급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과 [증지환급신청] 탭만 사용합니다.)

- [신청] 탭: 신청 또는 재신청의 경우
- [증지환급신청] 탭: 증지신청의 경우

2.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선택, [전송구분]과 [신청일자] 등의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된 목록에서 전송이 필요한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5. [선택전송]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바우처 금액이 생성됨 (전송이전에는 신청취소, 접수반려 가능)

• [유의] [전송정보]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후에 통지서 발행 등이 가능



**[읍면동, 시군구]통지서 발행**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통지서발행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통지서발행

### 상세설명

#### ◆ 대상자 현황

1. [조회구분] 을 선택합니다.
2. [보장구분]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통지서발행목록] 화면에서 통지할 항목 체크
5. [통지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통지서발행내역] 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7. [통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발송할 타입에 맞게 선택 후 버튼 클릭합니다.



## [읍면동, 시군구] 바우처 대상자 현황

### - 중지된 대상자 확인 시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대상자현황 확인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대상자현황

### 상세설명

❖ 대상자 현황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관리]-[바우처대상자현황]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서비스명] 을 [에너지바우처지원]으로 선택합니다.
2. [상태]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자목록] 화면에서 '전체/증지/'지원 증'인 대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전달사항 및 결정대기 현황 - 바우처 홈(시군구)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홈(시군구)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시군구)

(참고) [결정대기 현황]에 [에너지바우처지원]이 안뜨는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비스 목록이 팝업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체크(V)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상세설명

- ❖ 바우처 홈 (시군구) 메인 화면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시군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결정대기 현황]에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의 지원 현황이 신청, 접수, 완료 등으로 표시 됩니다.
- 2. 결정대기 현황의 신청상태의 건수를 더블클릭하면 각 상태에 따라 화면이 팝업됩니다.
- \* 검색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 접수, 방문조사의뢰, 판정, 완료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결정처리] 화면 팝업
- 전송오류, 수신오류, 미전송, 수신성공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송수신관리] 화면 팝업
- ✓ 기능설명
- [바우처 전달사항] 현재시간표시 및 이슈가 되는 3가지를 등록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대기 현황대상자] 결정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 통계입니다.



**[읍면동, 시군구] 이의 신청 및 결정**  
- 결정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 [읍면동 담당자] 이의신청 등록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상세설명

- ❖ 바우처 이의신청 등록 화면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이의신청등록]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신청정보]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판정결과 및 등급정보 등의 내역 조회됩니다.
- 2. 신청 대상자의 이의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이 저장되고 [신청접수] 버튼을 접수처리가 완료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 [공통] 이의신청 현황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이의신청현황

### 상세설명

- ❖ 바우처 이의신청 현황 확인 화면
- 1. 조회영역에서 관리행정동과 신청일자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 합니다.
- 2. 현재 이의신청 중인 대상자에 대한 현황이 이의신청목록에 표시됩니다.
- 3. 목록에서 신청처리상태 및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목록의 해당 신청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의신청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 기능설명
- [결정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기능

• [시군구 담당자] 이의신청 결정

• 위치 : 홈 > 차세대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신청결정

**신청처리**

② 신청결과    수    수용    거    거각    ②    저장

수용할만한 내용임    수용 및 거각 이유

수용 및 거각 내용

---

**이의신청내용 ①**

신청일자: 2015-04-20    이의신청구분:    신청금액:    등록

처분이 있음을 알릴지: 2015-04-17    처분통지를 받은 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텍스트

---

**구비서류**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일자	유료일자	대상자	파일명

닫기

### 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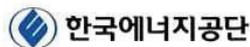
- ❖ 바우처 이의신청 결정처리 화면
- 로그인 후 [차세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바우처이의신청결정]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이전 메뉴인 이의신청 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이의신청 신청자의 등록된 이의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합니다.
- 2. 신청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를 선택하여 [저장버튼]을 클릭 결정처리를 완료 합니다.
- ✓ 기능설명
- 이의신청 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가 수용처리가 되면 신규 신청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신청현황 메뉴로 이동 됩니다.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 감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탈 가이드

(www.energyv.or.kr/workp)



## 업무포탈 사이트 주의사항



### 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 업무포탈은 Explorer 9, 10, 11에 최적화되어 있음
- 하위버전의 Explorer로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 참고
  - Explorer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
  - Google chrome을 다운받아 사용
- 업무포탈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연락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업무포탈 주요기능



## 업무포탈이란?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들이 관내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포탈 사이트
- 업무포탈 주소 : [www.energyv.or.kr/workp](http://www.energyv.or.kr/workp)
- 로그인 ID/비밀번호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담당자별 ID 및 비밀번호 제공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을 통해 ID확인 및 패스워드 초기화 가능

## 업무포탈 주요기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
  - 지자체별 신청 및 사용률 통계
  - 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사용 현황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 및 승인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

# 업무포탈 주요메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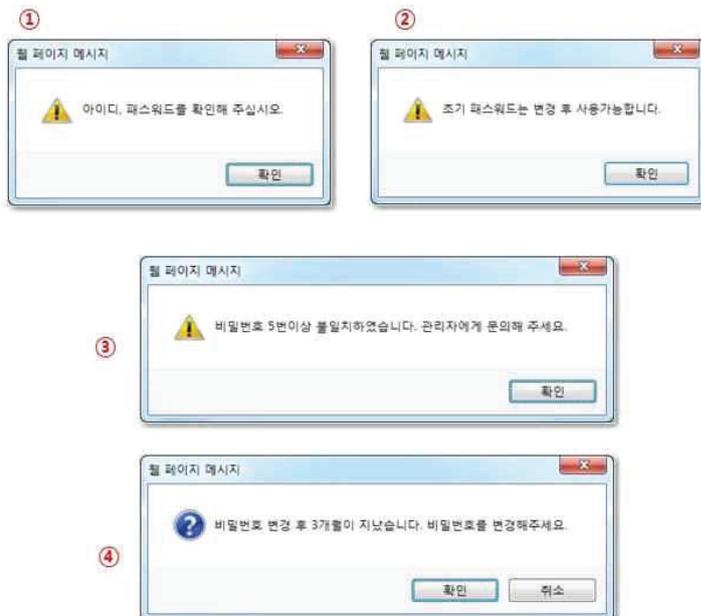
메뉴	내용
대상자연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사용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명, 신청접수번호, 신청일, 이용권종류, 자격상태, 중지여부, 중지 사유, 가구원 수, 이용권금액, 에너지바우처 이용내역(사용액, 잔액 등) 가상카드의 경우 차감받는 에너지원 및 고객번호, 등 확인 가능</li> </ul> </li> </ul>
지자체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기 및 수시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중지 안내, 안내문 발송 관련 안내, 등</li> <li>-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관련 등</li> </ul> </li> </ul>
지자체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 관련 교육자료, 매뉴얼, 홍보자료 등 다운로드 가능</li> </ul>
지자체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 신청 및 사용률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군구별 신청률 및 사용률 통계 확인 가능</li> </ul> </li> </ul>
환급형바우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액이 남아있는 대상자, 입금원료, 입금오류 등 환급형바우처 신청 및 승인정보 확인</li> </ul> </li> </ul>



## 상세설명

-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가능
- 초기 비밀번호 로그인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
- 초기 비밀번호가 아닌, 담당자별 수정된 개별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경우, 지자체 공지사항 화면으로 바로 이동
- 비밀번호 5회 이상 불일치 에너지공단 담당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담당자 본인확인 후, 초기화 실시)
- 비밀번호 기간은 3개월 단위로 변경 (보안정책상 특수문자 조합 등이 필요)

# 1. 로그인



## 상세설명

- 입력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에너지공단에서 부여한 초기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 경우
  -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사용이 가능
  -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5번 이상 불일치했을 경우
  - 이 경우 에너지공단에 문의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기입하였어도 비밀번호를 변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경우
  - 보안정책상,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 해야함.
  - 사용중인 비밀번호와 그 직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로는 변경이 불가
  - 취소버튼 클릭시 아무 동작(응답)도 없으니, 다시 접속하여 확인버튼을 클릭

## 2. 개인정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id: [영문], 지역:경기도)] LOGOUT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나의정보

아이디    [영문] (지자체)

성명

직명

직급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변경    비밀번호변경

한국에너지공단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호원대로 386 (용역동 1167번지) 대표전화 : 1600-3190  
Copyright 2016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 상세설명

- ① 로그인 후 상단의 ID를 클릭하면 나의 정보 보기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
- ②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변경 가능
  - 개인정보변경 버튼: 개인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비밀번호변경 버튼: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2-1. 개인정보(비밀번호변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id: [영문], 지역:경기도)] LOGOUT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비밀번호 수정

사용자아이디    [영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9자리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수정

한국에너지공단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호원대로 386 (용역동 1167번지) 대표전화 : 1600-3190  
Copyright 2016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 상세설명

- ①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비밀 번호를 확인란에 다시 한번 입력 후 수정 버튼을 클릭
-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2-2 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id : admin, 지역:경기도)] LOGIN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① 개인정보 수정

아이디: [지역(지자체)]

성명(필수): [ ]

직명(필수): 사회복지직

직급(필수): [ ]

전화번호(선택): [ ]

휴대폰번호(필수): [ ]

이메일(필수): [ ]

① 수정

한국에너지공단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문대로 588 (충서원동 1157번지) 대표전화 : 1600-0190  
Copyright 2014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 상세설명

- ① 수정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를 새로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지자체 공지사항 화면으로 이동

## 3. 지자체 공지사항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① 지자체 공지사항

① 제목 검색

총 78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78	2017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및 접수기간 2차 연장 안내	윤용노	676	2018.08.20
77	2017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및 접수기간 연장조치 안내	윤용노	1302	2018.07.26
76	2017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재안내 철저 요청	윤용노	1954	2018.07.06
75	환급형바우처 신청회소 관련 내용입니다.	윤용노	1031	2018.06.28
74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시 발생하는 오류 관련 사항입니다.	윤용노	1078	2018.06.18
73	2017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환급형 바우처)	손문주	1920	2018.06.14
72	에너지바우처 관련 설문조사	윤용노	901	2018.05.16
71	(중요)행복e음 서비스 중단 안내(5/4 20시~5/7 08시)	서문주	74	2018.04.27
70	에너지바우처 사용등록을 위한 주주소 안내문 발송	박진영	306	2018.04.24

### 상세설명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아래 목록에 조회
- ②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글에 대한 상세내용 확인가능

#### 공지사항의 주요내용

- >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매뉴얼)
- > 행복 e음 서비스 중단 안내
- > 중지자 및 재신청 관련 안내
- > 미신청자 및 미사용자 관련 안내
- > 안내문 및 문자발송 관련 안내
- > 이외 사업에 있어 지자체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

### 3. 지자체 공지사항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id: 00000, 지역:경기도)] LOGIN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지자체 공지사항

제목 에너지바우처 해외지급(1차) 입금 안내

작성자 김동훈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①

에너지바우처 해외지급(1차, 6.19~7.14까지) 신청 접수하여 광역시도 승인 전에 관하여 7.31일 부터 지급 하였습니다. (개별 상 '에너지바우처'로 표기)

지급 완료 또는 지급 오류 등에 대한 명단은 추후 공문을 통해 안내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2차 신청 접수 전에 대해서는 각 광역시도 별 읍면동의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③

다음글 다음글이 있습니다.

이전글 [간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일정 변경 안내(해당기간 시스템 정상 운영) 2017.01.25

한국에너지공단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문대로 308 (행정동 11676지) 대표전화 : 1600-0190  
Copyright 2016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 상세설명

- 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명 클릭
- ② 목록 : 공지사항 목록 확인 가능
- ③ 다음/이전글 조회 : 다음글/이전글 제목을 클릭

### 4. 지자체 자료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id: 00000, 지역:경기도)] LOGIN

업무포탈 지자체 업무포탈

지자체 자료실

① 제목 검색

총 3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3	환급절차바우처 현금 수령통(양식)	김동훈	293	2017.06.01
2	행복e음(신청 접수) 시스템 사용가이드 동영상	관리자	221	2016.11.18
1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김송환	1270	2016.11.02

②

한국에너지공단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문대로 308 (행정동 11676지) 대표전화 : 1600-0190  
Copyright 2016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 상세설명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결과가 아래 목록에 조회
- ②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

## 4. 지자체 자료실



### 상세설명

- 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명 클릭
- ② 목록 : 자료실 목록 확인 가능
- ③ 다음/이전글 조회 : 다음글/이전글 제목을 클릭

## 5. 지자체 대상자현황



### 상세설명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사업년도 : 조회를 원하는 사업년도 선택(예 : 4차(2018년도))
  - 생년월일: 년도4자리(ex:1992) 혹은 생년월일8자리(ex:19450231)로 입력
  - 신청접수번호: 16자리 모두 입력
  - 자격상태 : 중지중/사용중
  -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선택 가능
  - 상세주소: 전체주소 중 모두 혹은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
- ②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다운로드
- ③ 대상자명 클릭 : 해당 대상자의 상세내용 조회 가능

## 5. 지자체 대상자현황

대상자 현황

시업년도: 3차(2017년도)

①

신정정보 (현재 사용중)

신청접수번호	신청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구분	주소
신청일	관정일자	관정여부	관정사유	확신청구분	바우처주거형태		
2017.10.19	2017.10.20	격합	경상		아파트 오피스텔등		
에너지원 공급사명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원 고객계약자명	에너지원고객_동	에너지원고객_호	수급자구분		
삼빛에너지도시가스강릉	100018451		102	709	생계/의료		
전기 공급사명	전기 고객번호	전기 고객계약자명	바우처 이용공통류	에너지원	카드사		
			가상카드(요금차감)	도시가스			

대상자정보

대상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구원수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합산부	주소

### 상세설명

① 대상자 현황에서 대상자명을 클릭하면 대상자의 상세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

#### 대상자 현황 상세 페이지 설명

- > (신청정보)접수번호, 신청자, 전화번호 등
- > (대상자정보)대상자명, 전화번호, 가구원기준 정보 등
- > (가상카드)고객번호,공급사명 등
- > 가족원 정보
- > (실물카드)카드발급현황 등
- > 자격변동내역
- > 에너지바우처 사용내역(사용일자, 금액 등)
- > 환급형바우처 지급내역
- > 전출입지 내역

## 5. 지자체 대상자현황

가족원 정보

대상자	생년월일	관계	대상자	생년월일	관계
사면족	1954.01.14	본인	이혼처	2001.02.28	손

카드발급현황

번호	카드종류	카드사명	카드번호	발급일자
1	체크카드	NH농협은행	6233-9244-07*****	2016.01.15

자격변동내역

종지일자	종지사유	전송사건구	전입사건구	전입구분	전입일자	전입처리일자	주소
데이터가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내역

번호	사용일자	제공기관	사용금액	카드종류	카드번호
1	2017.12.09	삼빛에너지도시가스_강릉	45,470		
2	2016.01.09	삼빛에너지도시가스_강릉	62,530		

이용권금액 108,000      총사용액 108,000      잔액 0

환급형바우처 지급내역

입금일자	입금금액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출입지 내역

번호	전입일자	전입처리일자	전입지 주소
데이터가 없습니다.			

②

[ 목록 ]

### 상세설명

②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

- 주의사항 :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두 단계 뒤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직전 목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번 '목록' 버튼을 클릭해야 함

## 6. 지자체 통계

① 지자체 통계

※시도명을 클릭하면 해당 시도의 시군구별 통계가 조회됩니다.

엑셀 다운로드

지역	사업년도	추경가구수	대상가구수	발급가구수	발급률	생성액	사용액	사용률
① 서울	2015	96,488	96,488	85,165	88.3%	7,771,956,000	7,078,968,911	91.1%
	2016	103,295	101,953	91,306	89.6%	8,482,322,000	7,353,025,694	86.7%
	2017	106,179	102,122	96,969	95%	9,188,523,000	8,239,657,530	89.7%
부산	2015	56,587	51,659	49,157	95.2%	4,467,756,000	4,059,041,121	90.9%
	2016	58,968	57,533	51,887	90.2%	4,804,657,000	4,075,489,813	84.8%
	2017	60,716	57,446	54,703	95.2%	5,170,443,000	4,483,290,758	86.7%
대구	2015	35,406	33,100	30,753	92.9%	2,832,393,000	2,483,013,493	87.7%
	2016	35,943	35,441	32,242	91%	3,017,036,000	2,522,918,021	83.6%
	2017	36,909	35,199	33,527	95.2%	3,198,748,000	2,780,688,614	86.9%
인천	2015	32,259	31,117	28,961	93.1%	2,689,770,000	2,458,335,981	91.4%
	2016	34,602	33,305	31,221	93.7%	2,951,637,000	2,594,945,812	87.9%
	2017	35,878	34,654	32,831	94.7%	3,164,771,000	2,952,432,521	90.1%
광주	2015	19,637	18,209	16,647	91.4%	1,528,662,000	1,419,127,217	91%
	2016	19,477	18,954	18,013	95%	1,710,482,000	1,418,388,315	82.9%

### 상세설명

① 지자체 통계에서 시도 지역명을 클릭하면 시군구별 통계 조회 가능

②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다운로드

#### 지자체 통계 페이지 설명

- > (지역) : 시도별 통계(지역명을 클릭하면 시군구별 통계까지 확인 가능)
- > (대상가구수) 2018.10.17일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한 대상가구수
- > (발급가구수) 에너지바우처 승인완료된 가구수
- > (발급률) 발급가구수 / 대상가구수
- > (생성액) 에너지바우처 총이용권 금액
- > (사용액) 관내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 > (사용률) 사용액 / 생성액

## 7. 가맹점 현황

① 가맹점 현황

엑셀 다운로드

총 69,074건

카드사	가맹점명	주소	면적제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등록일
국민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신한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삼성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현대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농협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하나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신협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우리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토스카드	주유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제	123456789	1234567890	2018-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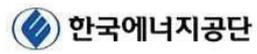
### 상세설명

① 가맹점 현황 검색조건을 입력한 뒤 검색버튼을 누르면 조회 가능

> 예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주유소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 지역1(강원도), 지역2(춘천시) 가맹점명(주유소)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조회 가능

②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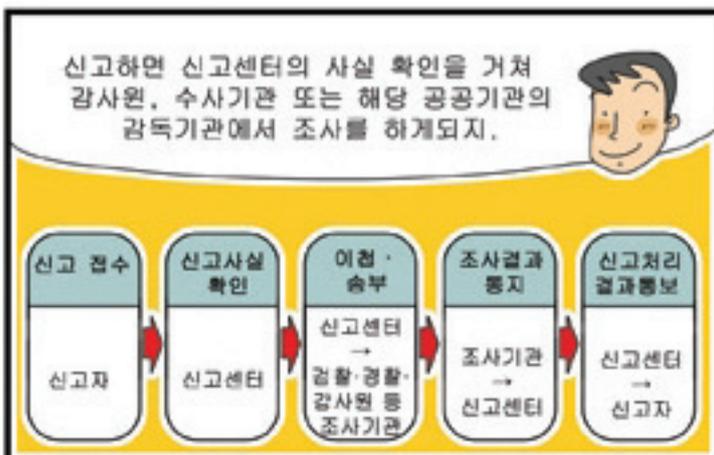


# 보조금 부정수급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돼.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10 이야.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acro.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텍스	(02)2110-0678



근데 신고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 거 아냐? 그러게. 알려지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 ###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 구입비를 과다 산정
  -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을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예: 임대사업)
  - 보조금을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대어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기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담보설정·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반환 등



